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 때 : 2001년 3월 17일(토) 오후 2:00 - 18일(일) 오후 5:00

- 곳 : 파주 흥원 연수원

- 준비하는 이들 : 이김현숙, 정경란, 전은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용환(변호사), 이혜숙(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카린 리(미국친우봉사회),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이대훈(영국브래드포드대학평화학)

■ 워크숍 전체 일정

[Session) I		17일(토)
• 등록	(pm 2:00~2:30)	
• 기조발제 (사회: 이김현숙 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pm 2:30~2:50)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 •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패널토의	(pm 2:50~3:50) 순차통역(각15분)	• Chien Hsi-Chien (Peace Time Foundation in Tiwan총무) • Ricardo Pinzon (Colombia) 라틴 아메리카의 양심적 징집거부운동
• 휴 식	(pm 3:50~4:00)	
• 질의응답 및 토론	(pm 4:00~5:00)	
[Session) II		
• 영역별 발제 ①② 질의응답 토론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	(pm 5:20~7:00)	<군대폭력과 군의문사> • 이혜숙(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 Mama Hwang (mother's group in Tiwan)
• 저녁식사	(pm 7:00~8:00)	
• 영역별 발제 ③④ 질의응답 토론 (정경란 국제협력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pm 8:00~9:30)	<병역미필 피해자-여성, 장애인, 군대내성폭력> •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양심적 병역거부, 징집제에 의한 피해실태>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 작은 잔치	(pm 9:30~11:30)	• 김용한(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Session) III /18일(일)		
• 아침식사 및 휴식	(am 7:30~9:00)	
• 국내외 경험나누기 및 UN관련법 (윤정숙 사무처장/ 한국여성민우회)	(am 9:00~12:00)	<국내외 양심적 징집거부 사례 및 한국에서 가능한 대안탐색> • 국내 : 김삼석 • 국외 : Chien Hsi-Chien, Ricardo Pinzon • UN관련법 : 이대훈(브레드포드대학 평화학)
• 점심식사 및 휴식	(pm 12:00~13:30)	
[Session) IV		
• 대안 및 전략 토론 (사회: 이김현숙 대표)	(pm 1:30~4:00)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한국 징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창수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정책실장, changsoo@korea.com)

1999년 12월 23일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로 보일 정도로 쟁점이 되었다. 군 경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점제도 폐지’가 ‘군경력에 대한 보상 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남성들의 반발이 컸다. 군가산점 제도 논란에서 나타난 남성들의 태도는 “돈 없고 뺏겨서 강제 징집되어야 했던 힘없는 남성을 상대로 싸움을 건 여성단체의 부도덕한(?) 행태를 열렬히 비난하면서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병역기피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였다”고 이해된다. 즉 한국 남성들의 징병제 아래서 군복무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사건이다. 이는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에 대한 검토는 강제적 군복무의 문제점 해결,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제대군인들의 지위 향상과 군대 운영의 민주화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징병제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징병제의 문제점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많은 나라들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의무병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의무병제의 모순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국 등의 국가는 지원제로 전환하였고,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징병제를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징병제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병제에서도 인력비용이 상승한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징집병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징집병에게도 민간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인력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병역의무의 불평등성이 나타난다. 징병제의 핵심은 형평성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때문에 불공평성이 두드러진다.

셋째,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므로 장기근속자가 부족하여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현대무기체계는 높은 숙련도때문에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병사들이 의무기간이 끝나버리면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서 징병제는 근거를 잃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보상황, 국민의 방위의식강화, 예산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징집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민의 방위의식은 징집제에 의해 고취되지만은 않는다. 국민의 애국심과 충성심에 기초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를 지닌 모병제이다. 예산 역시 앞서 살핀 것 처럼 징집제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징집제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징병제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무기간과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확대하며, 징집병에 대한 훈련은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모든 징집의무자를 징집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라고 판단하여 지원제와 징집제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토국가들의 경우 지원병의 규모가 징집병을 초과하고 있다.

<표1>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징 병 제	-병역의무의 형평부과 -우수자원자의 확보 -군의 단결과 지휘의 용이 -장기복무 군전문요원의 확보곤란	-병무행정의 복잡 -국민부담의 과중 -특수장비운용요원의 확보곤란 -장기복무 군전문요원의 확보곤란
모 병 제	-장기복무로 인한 국민부담경감 -병역의무로 인한 압박해소 -특수자질자의 확보 용이	-유사시 예비군동원체제의 확보곤란 -국토방위를 일부국민이 담당 -병역의무에 대한 사명감 결여 -국가예산소요

자료 ; 김문성, 병무행정론 , 44쪽, 법문사,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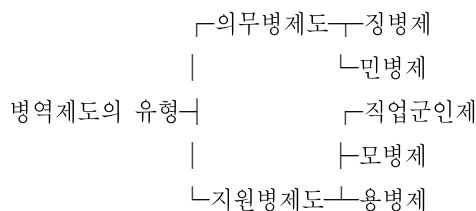
한국 징병제도, 병력수급과 형평의 문제 초래

병역대상자의 수급과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전투력을 보유할 수 있는 병역제도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다. 특히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수급과 형평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도 병역대상자의 수급과 형평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정규병력의 규모와 복무기간이 한정된 상태에서 징집제도를 실시하니까 병역수급과 형평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병역인구의 과잉으로 인한 병역의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위병제도를 신설하여 군전투력의 보강과 함께 잉여자원의 흡수를 꾀하여 왔다. 병역특혜제도로 되어버린 병역의무특례제도 역시 원래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의 징집제도가 계속된다면 거대병력을 거느리는 병영국가에서 탈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복무기간은 징집제도가 병력유지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제도나 병력의 규모와 관련하지 않는 복무기간의 단축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육군의 복무기간이 26개월로 단축된 것도 방위병폐지에 따른 병력규모 조절의 노력이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26개월의 복무기간도 길다. 적정복무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원제로 전환은 필요하다. 결국 징병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이러한 병역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길이다.

<표1> 병역제도의 유형



징집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군대의 억압구조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할 필요는 병력수급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은 아니다.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권리의식이 확산되면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가치의 확산이 군대의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 사회생활에 비교해서 군생활에 대한 매력의 감퇴는 징병제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사이에도 이런 현상은 이때 1880년대말부터 생겼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989년에 실시한 『장병의 의식구조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현역복무를 안하는 청년들을 행운아로 보며, 직무에 대한 만족감도 낮고, 전우와의 일체감, 상경하에 분위기, 지휘관에 대한 존경심, 군인으로서 자부심도 낮다.

둘째,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강한규제나 인격을 매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셋째, 군법이나 군기유지활동이 너무 엄중하여 형식에 치우쳐 있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군의 현실이라고 본다.

넷째, 군생활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도 많으나(59.3%), 군복무의 최대목표는 시간을 때워서 성한 몸으로 제대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많다(30.2%).

이러한 경향은 장교집단의 의식성향에도 나타난다. 270명의 장교에 대한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할 생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2.9%인 35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근무하면서 고려해보겠다는 사람이 132명이고, 기회가 있으면 전역하겠다는 사람(69명, 25.5%)과 가능하면 즉시 전역하겠다는 사람(34명, 12.5%)이 38%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사병들과 장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징병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이나 사병들이 군에 대한 가치를 사회생활에 대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변화된 국제정세, 징집제도의 강제성, 군대의 낙후된 민주주의 때문이다. 국제정세나 남북관계의 변화로 국민들은 징집제도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라고 여기기 보다는 강제성 있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내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위기는 사병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도의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군대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독이 병역제도개선과 함께 군의 시민화와 정치교육을 통한 문민우위적 통제하의 군위상정립, 나치시대의 정치적 특권화와 무조건적 굴종적인 군대청산, 군내부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병사 개개인의 권익신장과 양심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인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병력규모 감축과 병역제도 전환

한국의 상비병규모는 국방부가 91년 9월 5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라 방위병제도가 폐지되어 70만 규모가 되었다. 병력규모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통상 적당한 병력규모는 인구의 1%를 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의 병력규모는 인구의 1%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병력규모에 대한 고정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병력규모는 정치지도자들이 군사전략적 감각에 의해 임의로 정해야 하는 숫자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가운데 통일이전 남북한의 군사력의 최종수준을 10만명으로 제안한 사람도 있다. 북한도 90년 5월 30일 발표한 5.30 군축안에서 남북한이 군축을 합의한 후 4년동안 3단계로 병력을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1단계에서는 30만 유지, 2단계에서는 20만, 3단계에서는 10만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당한 규모의 방위력이란 병력규모통제를 통하여 소수병력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상비병의 수준을 30만으로 하여 군대의 전문화를 꾀하고, 군대와 사회의 민주화로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대처하는 사회적 대응능력을 향상한다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30만으로 감군은 그동안 북한도 주장한 바 있으므로 북한의 대응을 유발하여 남북한의 평화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남북의 60만 상비병력은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통일조국의 방위에도 적합한 규모가 된다. 한국군을 30만으로 감군하고 여기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병력을 배치하면 된다.

한국군의 병력 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나토국가들과 미

국 등의 병력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0.8%인데 비하여 우리는 1.7%가 된다. 병력을 30만으로 줄일 경우 인구에서 차지하는 병력의 비율은 약 0.7%가량이 되어 평균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30만으로 감축한다면 결국 현재의 징집제는 해마다 18세가 되는 징집대상인구가 40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지원제로 전환하지 않고 30만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징집대상인구를 고려하여 볼 때 복무기간이나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30만으로 감축할 경우에는 병역제도 자체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예비군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30만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로서 재정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병역제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다.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한다면 직업군인제도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장교와 하사관은 직업군인제를, 사병은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군인제란 군인으로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제도이다.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며, 군인의 길에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된 제도이다.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그리고 병과별 희망에 따라 지원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모병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애국적식에 바탕을 둔 제도라는 점에서 용병제와 다르며 명예로운 높은 직위 등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등 군인의 길에 생애를 바칠만한 보람있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업군인제와도 구분된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16만 직업군인을 유지하고 여기에 14만의 지원병을 모집할 수 있는 군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확보한다면 30만의 정예군대가 구성된다. 그리고 지원자 개개인에 대하여 능력과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14만 지원병의 군복무기간은 장단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군대가 민주화되고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과 군제도의 개선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전통적인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안보 개념정립이 중요하다.

향토예비군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한다면 예비군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뿐더러 예비군제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피하다. 예비군을 편성하는 이유는 상비군의 유지를 비용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즉 유사시 요구되는 예비군은 평상시에도 막대한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향토예비군제는 이러한 예비군 고유의 기능을 담당과는 거리가 멀다. 도리어 한국의 향토예비군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예비군과는 성격이 다른 기형적 제도이다. 예비군이 필요한 이유에 따르면 예비군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상비군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예비군은 총체 전력의 일부로서 독자적인 전력을 형성하여 상비군과 협력하여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역복무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비군에 복무해야 한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선택적 지원제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징병제’를 지원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비군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하고 예비군을 유사시 전력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향토예비군제도를 완전폐지하여 한다. 그리고 선별지원제를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별지원제는 현역지원과 예비병지원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징집대상인구에 대한 형평의 구현때문에 필요하다. 즉 징집대상자가 현역과 예비역 가운데서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제 아래서 현역의 지원유인책이 되면서 동시에 유사시 전투력을 보유한 예비군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 경우 지원예비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기초적인 훈련을 한 다음 일정기간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예비군 편성규모와 기간은 전투력,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병력규

모는 상비군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약 60만이면 적합할 것이다. 앞으로 징집대상인구는 약 35만 수준이므로 예비군 편성기간을 24개월로 한다면 인력수급에는 차질이 없게된다. 필요하다면 예비군의 손실보충을 위한 대기예비군을 구성할 수도 있다.

죽임을 강요하는 징병제를 지원제로 바꾸야

현재의 병역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분명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병역제도 개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만 감축조치는 병역제도의 구조적인 변혁을 가져온다. 병역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도 불가피하다.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원제로 전환은 병력수급과 형평의 문제로 인하여 현역과 예비역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직업군인제에 의한 현재의 16만 규모를 유지하는 직업군인과 모병제에 의한 14만 규모의 사병을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의 사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 정도에서 검토한다.

둘째, 향토예비군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성격이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비대한 현재의 향토예비군을 폐지하고 지원병제도와 결합할 수 있는 예비군을 창설한다. 현역지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군 복무의 의무를 지닌다. 예비군의 규모는 60만, 편성기간은 24개월정도가 적합하다.

셋째, 이러한 조치들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가 있다. 단계적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 조치가 뒤따른다면 상호군축으로 발전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냉전제도의 해소와 평화정착의 관점에서 병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의 징병제도는 제도적으로도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평화운동은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관점을 뛰어 넘어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징병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사병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비도덕성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징병제는 지원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대만 代替役(社會役) 제도에 관한 경험 소개

簡錫土皆

1. 기본이념 :

社會役(즉 대체복무제도, 또는 代替役이라 함.)의 도입은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사회가치 개선 사업이기도 하다. 유럽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社會役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국가에 있어 이 제도의 장점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치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물질 추구에서 사회 공익 증진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있는 대만은 의료, 노약자, 산림보호, 소외지역 교육, 재해 방지, 지역 건설 등에 있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의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개선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社會役 도입의 원동력이다. 社會役의 도입은 兵役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군사 대립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쟁이 애국심의 유일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 돕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희망의 병역’ 즉 社會役을 도입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2. 과정

1) 저항: 주로 국방부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다. 그 이유는

(1) 병력부족으로 직업군인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라는 것. 그 후 입법원의 압력 하에 국방부에서는 ‘精實方案’을 추진하였고 감원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해 많은 잉여병력이 나타나 社會役제도를 반대하는 우려를 바로 해소 할 수 있었다.

(2) 국군의 자질에 영향을 끼쳐 양질의 인력들이 社會役에 몰려 군인 전체의 자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그래서 국방부와 협상해서 추첨방식을 통해 國防役 또는 社會役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3) 사회에서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 또는 사회 상류층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인식한다.

(4)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므로 취업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2) 優質文教基金을 설립하여 社會役제도를 추진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1) 민간단체에서 ‘社會役民間推進聯盟’을 설립했다. 이 단체에는 장애자연맹, 중화민국 지체자 가장총회, 에텐사회복지기금, 대만환경보호연맹, 노동자 및 여성운동 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2) 입법원에서 56명의 입법위원들이 ‘ 초당파社會役추진팀’을 구성했다.

(3) ‘精實方案’이 실시된 후 병력인력이 남아돌아 많은 병역 적령자들이 병역대기하게 됐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가 社會役을 추진하는 좋은 시기가 됐고 이와 함께 병역기간을 단축하는 운동도 전개할 수 있었다. 기존 2년 戰鬪役을 1년 10개월로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社會役 군복무기간을 늘렸다.

(4) 1997년 9월 행정원, 내정부 役政司와 국내외 학자들이 유럽에 社會役제도를 견학했다. 그 후 정부측에서 실시방안을 수립한 후 ‘행정원병역대체역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3) 헌법에서는 ‘국민은 병역의무가 있다’고 규정할 뿐 社會役에 대한 언급은 없어 社會役의 추진은 위헌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헌법 수정과 관련된 국민대회 대표들을 설득하며 헌법 수정 시 ‘국민을 병역 또는 社會役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넣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대회 폐지’라는 정쟁이 이 조항의 토론 자체를 무색하게하여 헌법 수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 병역법에 한 조항을 추가해 兵役代替役이라는 명칭을 넣도록 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代替役 실시 조항을 제정했다. 수정된 병역법은 일반 국방역 기간을 2년에서 1년 10개월로 단축하고 代替役기간을 2년 2개월로 정했다. 종교양심법 지원자들은 2년 9개월로 하여 병역의 공정성을 유지했다.

4) 법률 수정 후 2000년 7월에 ‘代替役’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3. 대만社會役(代替役)의 내용

(1) 代替役은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不服從, 탈병, 하극상 등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2) 代替役 종류는

A: 사회치안류: 경찰역, 소방역

B: 사회봉사류: 社會役, 환경보호역, 의료역, 교육봉사역

C: 기타 행정원에서 지시한 종류.

(3) 사회상류층 클럽이 되지 않도록 代替役의 군복무기간은 국방역 보다 4개월 길다.

(4) 代替役의 대우는 현역 군인에 준 한다.

(5) 代替役의 군복무자는 일반 병역의 상해위자료, 의료보험, 숙식, 복장 등 모든 규정에 준한다.

4. 개선해야 할 문제 :

(1) 개인적인 문제:

* 군복무자는 전공에 따라 代替役을 신청 할 수 있어야 하며 우선권이 부여돼야 한다. 추첨으로 해서는 안 된다

* 代替役 군복무자는 신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신분과 자주 혼동된다.

* 考試權, 차표, 비행기표 등의 할인율이 일반 군인보다 낮다.

*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 전과자는 경찰역 또는 교육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전과자 조사 방법등.

* 代替役과 봉사받는 자와의 다른 성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 군복무기간에 거주 수준의 차이.

(2) 사용자측:

* 사용자측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代替役을 값싼 노동자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 사용자측에서 집단숙식을 제공할 수 없어 代替役 활용을 감히 신청하지 못 한다.

* 사용자측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어 內政部 役政司에서는 지역감독관을 설치하여 우수한 代替役을 지역감독 간부로 선정해야 한다.

(3) 사회:

* 국방부에서 여전히 전공에 따라 징병하는 것을 반대한다.

* 사회 전반적으로 代替役에 대한 인식이 달라 社會役도 여전히 지켜야할 기율이 있다는 것을 소홀히 한다.

軍인권위원회

<취지>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징병제로서 해당 연령의 남성은 모두 군인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대만을 강탈하고자 부심하는 강대국 중공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 건아들은 대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 군대를 양성하는 목적은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 속에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화목한 대가족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단결하여 외부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인들도 반드시 합리적인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군대에서 피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당신을 위해 권리와 행복을 되찾아 줄 것이다.

군대 내의 인권과 안전, 복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군인권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이다.

상처의 낙인

1995년 6월 9일, 나는 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오슝(高雄)의 좌영(左營)항에서 군복무중인 아들 황궈장(黃國長)이 평상복을 입고 917호 남양(南陽)함에서 물에 뛰어들어 탈영을 했다고 하며 빨리 아들을 내놓지 않을 경우 본인이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영과정에 대한 군측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아, 믿기 어려웠으며 나는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6월 15일 중국어선이 팽후(澎湖)해의 무도우(目斗)섬 부근 해상의 해역 교차점에서 뜻밖에도 황궈장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6월 17일 국제적십자협회는 여러 곳을 거쳐 마침내 가족들에게 황궈장의 죽음을 알렸고 내가 푸젠(福建)성 취엔조우(泉州)의 스스(石獅)항으로 가 시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황궈장은 사망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온몸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머리부분에 약 22센티미터의 철 침이 박혀 있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으리만큼 참혹했으며 의도적으로 살해되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철 못은 비통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고 사실을 은폐하여 국민과 세상을 우롱한 군측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軍인권위원회의 탄생

군대의 위협통치에 의한 은폐 작업으로 수 십년 동안 황궈장 사건과 유사한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재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만에는 부당한 훈육으로 인해 매일 평균 1.29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으며 군측이 은폐하고 있는 중상 또는 불구사례는 이 숫자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인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군대의 어두운 현실을 밝혀내고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안전과 정신적 도움을 주기 위해 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시켜 군인권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며 갈수록 힘들고 무거워지는 위원회 업무를 버티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으며 다음 단계로 군 인권카드를 발급하고 군인구조 핫라인을 개설하여 군인들이 위협이나 고통을 당할 경우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방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일부 신고 기관들은 그저 모양만 갖추었을 뿐 유명무실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도 언제나 감감 무소식이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그저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연결해 주고 몇 차례 의 도움을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약하고 상처 입은 가족의 몸으로 총과 탄약으로 무장한 군대 고위급 관리의 경호대와 감시 기관의 보이지 않은 심리적 위협에 대항했으나 힘없고 고통 당한 두 손으로 어떻게 해야 특권계층의 군포와 전차를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군인권위원회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부당한 훈육과 특별 명령에 의해 피해를 당할 경우 그 육신과 정신에 남는 고통은 본인과 가족에게 있어 일생동안 떨쳐 버릴 수 없는 악몽입니다. 원래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들이 많은 사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라고 아들을 보냈다가 아예 아들을 영영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평생 불구의 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을 하며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의 인권문제는 국가와 사회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와 같이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통스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이 또한 군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본 위원회는 군인들의 사고 사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피와 땀으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적절한 보장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자 위로가 됩니다. 만약 군대에서 정신적인 압박과 위협을 느낀다면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말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국민들이 망각할수록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가 냉담할수록 군대는 더욱 무지막지해집니다. 비록 우리의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발휘,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그들이 대만 젊은 군인들의 미래를 진지하게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힘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은 생명을 보장 받고 인격을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과정에 대한 고찰

Ricard Pinzon (CO activist in Colombia)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의 역사는 9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기독교와 카톨릭 등 종교계와 연계된 통치 조직들의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그 틀을 잡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콜롬비아의 경우 강제적인 군복무 참여를 거부하는 비폭력 운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바 이를 위한 전반적인 합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비폭력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폭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무장행동도 법의 테두리에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게 된다.

세계 각국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콜롬비아의 헌법 18조에 명시된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기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라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토대로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은 그 의의를 가지게 된다.

개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철학적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고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기초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전쟁과 갖가지 분쟁에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라도 개입하는 것과 강제로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이라 칭한다.

이에 대한 고찰내용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약 500년 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자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사업과정에서 토착민들을 다스리는 방안으로 도입한 카톨릭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전통을 이용하여 카톨릭을 신봉함과 동시에 스페인 국왕에 대한 충성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정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종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새로운 종족이 출현하게 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됨과 동시에 토착민들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는 정복자들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커지게 됨으로써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군대와 민간인을 동원한 정복 운동과정은 이를 위해 국민을 통제하고 또한 이들을 이러한 과정에 강제로 참여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 요구되었으므로 점차적으로 헌법에 이러한 사항들을 첨부시켜 이를 합법화하기에 이른다.

20세기에 있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수많은 군사 쿠데타 등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군사기관들은 통치와 통제의 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인권유린, 권위주의, 군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는 등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자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 운동이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80년대부터 이미 군사 정부들을 타도하는 운동이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민주주의로의 이양 의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게 되며 또한 국민의 참정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각각의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의 인권에 관한 조항들이 속속 헌법에 새롭게 명시되는 등 헌법개정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콜롬비아 사례.

콜롬비아는 유감스럽지만 50년 이상 마약과 각종 범죄와 연계된 게릴라를 비롯한 여러 무장 조직들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로 낙인 되고 있다.

만연된 콜롬비아 정부의 부패와 이러한 인권 유린 사태들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유산과 풍부하고 우수한 농수산, 광업자원을 지니고 있는 콜롬비아의 진정한 참모습 등이 커다란 타격을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게릴라를 비롯한 이러한 무장 조직들과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하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콜롬비아 안보 기관들의 활동들은 현재 인권과 평화문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화되었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진압기관등에 강제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양심적 징집 거부운동이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표출되게 되었다.

1993년 제정된 헌법 48조에 모든 콜롬비아의 국민은 공식적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군대에 참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콜롬비아에서 군복무는 의무적이다. 따라서 18세의 대부분의 콜롬비아 남자들은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추첨제로 되어있는 이 군 체제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이상 받은 사람은 1년의 복무기간을 가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18개월에서 24개월사이 복무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15세, 17세 등의 청소년들이 군복무를 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어 왔으나 1년 전부터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군에 징집하는 관행이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는다.

신기하게도 군에서 복무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농촌 출신들, 흑인들, 원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추첨을 통해 군복무가 면제된 청소년들은 그들의 경제수준에 따라 미화 150달러에서 10,000달러 혹은 이상을 세금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들 청소년들이 이 금액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므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간혹 군대에 불려 가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무장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게릴라들은 강제로 또한 무차별적으로 그들 조직에 18세도 안 되는 남녀 어린 이들과 농촌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자들은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폭력 무장조직에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위치한 콜롬비아의 양심적 징집 거부 단체는 이 운동의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의 중추적인 작업들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교육부문

-비폭력을 토대로 한 직접적인 행동 부문

-정치참여 부문

-국내 및 국외 관련기관 들과의 연계 활동 부문

이러한 운동은 우선적으로 청소년 계몽운동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들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되며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원 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는 강제적인 군 징집에 대신하여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을 뿌리내리는 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2. 매스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3. 이 운동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입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비폭력, 폭력적인 분쟁 대처방안, 교육 환경에 있어서 분쟁에 대한 숙지, 양심적 징집 거부운동 등에 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국내외를 막론한 공식적인 이벤트들을 조직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보스니아, 터키, 크로아시아, 핀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등을 포함한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1993년 ICOM의 개최 또한 이 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

이외에 1993년부터 ROLC 즉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국가의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단체의 창립국가들과의 활발한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콜롬비아의 다른 국내 도시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심적 징집 거부 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원 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콜롬비아의 군 폭력과 인권 유린

콜롬비아 내전 및 폭력은 종종 마약 밀매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좀더 본질적인 데 있다. 희생자들 가운데 막대한 수가 비전투(noncombatant) 민간인들이다. 1987년 이래, 3만5천 명 이상의 비전투 민간인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콜롬비아는 풍요로운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평등한 부의 분배로 인해 몇몇 인구 지역들은 극심한 곤핍에 시달리고 있다.

콜롬비아는 석유 수출국이자 주도적인 커피 생산국으로서 자원이 풍부하며 인구 밀도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콜롬비아는 난무하는 폭력으로 골치를 썩고 있고,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코카인 생산의 천국이 되고 있으며, 헤로인의 주요 출처국이기도 하다. 콜롬비아에 폭력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1970년 중반부터 계속되어온 대대적인 마약 밀매를 종종 지적하긴 하지만,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는 문제의 마약 거래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서 자행되어 왔다. 폭력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피튀기는 경쟁의 산물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폭력은 반체제 인사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콜롬비아의 정치 문화와 급박한(desperate) 여건에서 양산된 것이다.

콜롬비아는 수십 년 간 자유당(Liberal)과 보수(Conservative)당 양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장악해 왔다. 양당간의 정전은 종종 내전과 지역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지난 La Violencia 분쟁 기간(1948-1953년) 중에 무려 1백4만5천 여 명이 살해되었으며, 전후로도 몇십 년 간 두 정당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여타의 진보적 견해들을 배제시키는 타협안을 도모하는 일에만 협력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이 해계모니의 단물을 빠는 동안 국가부 배분의 불평등성은 악화일로로 걷고 있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층 인구가 국가 전체 수입의 10% 에도 못 미치는 수혜만을 누리고 있는 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층 인구는 70%에 육박하는 국가의 부를 취해 가고 있다. 20%라는 살인적 실업률을 기록하던 지난 1999년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에 주어진 매력적인 옵션들이란 마약 거래 아니면 정치 갈등이었다. 맹렬한 반군 소탕전(La Violencia에서 연원)을 선포한 콜롬비아 정부는 두 주요 반군 세력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민족해방군(ELN)을 토벌하기 위해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paramilitary allies)¹⁾를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군소 반군 세력들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군들을 무장해제한 정당의 형태로 전환시키려던 희망은, 1985년 무장혁명군과 기타 좌파 정치 그룹의 지원하에 창설된 애국 연합(Patriotic Union)당의 멤버 2천5백 명이 살해됨으로써 무산되었다.

1999년에는 전투와 관련된 기록상의 사망자만 1천 명에 이르렀고, 최근에 무장혁명군의 공격은 더욱 빈번해졌다.

1) 준군사 세력은 대략 7천여 명(남성)에 이른다. 그들은 콜롬비아 정부군과 대지주, 다국적 기업과 마약 카르텔로부터 활동 자금 및 군사 훈련, 각종 군수 물자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민간인들이다. 콜롬비아 군대는 농민들을 게릴라 세력과 격리시키고 게릴라 세력의 활동 배후를 파괴할 목적으로 농민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도시빈민가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1987년 이래로 3만5천 명을 넘는 비전투 민간인들이 살해되거나 돌연히 “사라졌으며”, 그 대부분이 정부군 내지 준군사 조직의 소행이었다. 최근 들어 군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준군사 조직에 의한 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량 이주가 속출하고 있으며, 파나마와 베네주엘라로 향하는 피난민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반군 세력 또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지난 15년 간 1천5백만 명 -1999년에만 30만 명-이상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반군 활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반체제 인사들 - 인권 수호가, 변호사, 판사, 농민 운동가, 노동 운동가, 교사, 학생- 또한 희생되었다. 반군들은 이들을 친정부 세력으로 의심하여 표적으로 삼았으며, 1999년에만 근 600여 명을 인질로 삼고 몸값을 받아냄으로써 반군 활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반군 측 민병대(밀리샤)와 경찰 측 살인 부대(우익 민병대) 모두가 정치 운동가와 “사회 불량 분자”로 낙인 찍은 인사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자기들의 사업을 공공연히 반대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마약 밀매상들이 거들지 않을 리 없었다. 마약 밀매상들은 그들의 부를 기반으로 거대 지주로 발돋움하였으며, 반군 및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마약 거래상들이 정부군에 협력하여 준군사 살인 부대(paramilitary death squads)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998년 취임한 안드레스 빠스트라나(Andres Pastrana) 콜롬비아 대통령은 업무 개시 직전에 무장혁명군 지도자, 마누엘 마룰란다(Manuel Marulanda)를 만나 최후의 평화 협상을 벌였다. 그 이전에는 민족해방군이 콜롬비아 민간 단체 대표들과 독일에서 회합하였다. 혁명무장군에 대한 일종의 호의적 제스처로, 정부는 남중양 콜롬비아, 약 1만6천 평방 마일에 주둔하는 병력을 철수시켰다. 1999년 말미의 짧은 휴전 기간을 이어받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민족해방군에 대해서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9년, 빠스트라나 정부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원조 조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다차원적 계획안인 “플랜 콜롬비아”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평화 협상이 진척되는 가운데도 갈등은 가일층 심화되었고, 2000년 1월 클린턴 정부는 콜롬비아에 대한 거액의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일괄 원조안을 내놓았다.

◀ 현 미 정책의 문제점들 ▶

미국의 정책은 모순적이다. 한편으론 인권 운동을 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인권 유린에 연루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원조의 명목은 마약 퇴치일지 모르나 사실상 반군을 소탕하는 데 지원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군사적인 대결과 내전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반군(narcoguerrilla)” 이론은 반군 소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길 원치 않는 미국 정부가 콜롬비아 군을 지원할 때마다 어김없이 들고 나오는 구실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연두 교서에서, 자신의 콜롬비아 일괄 원조 계획은 콜롬비아 정부가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러나 대체 “이번 투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무부의 외교 정책 FY2000에 관한 국회 연설 문건을 보면 “콜롬비아의 마약 일소 투쟁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군이 말하는 최우선적 투쟁은 바로 좌파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일이다. 근래 들어 생겨난 “마약-반군”이란 단어는 이 두 가지 전투의 의미를 합친 조어로서, 정치적 편의주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콜롬비아 방위군을 지원하는 미국 원조의 관행은 현 마약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적어도 1960년대 이래로 미국은 공산주의를 발본(拔本)한다는 명목하에 자국의 군사 전문가들(특수부대, 국제 군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각종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반군 소탕을 위한 콜롬비아의 군사 행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

았다. 각종 무기와 군수 물자를 제공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찍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마약 밀매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던 1989년 이래로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미국 원조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였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목 덕분에 말이다. 최근까지 콜롬비아 군당국도 그 목적이 마약상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를 괴멸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1994년과 1995년에 미국 의회는 미국 원조가 추구하는 최우선적 목표가 게릴라 소탕이 아니라 마약 일소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해외 세출 운영 채널을 통해 콜롬비아 군사 지원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의회는 행정부와 의견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대규모 자금을 콜롬비아 군경의 마약 대책 지도부(DANTI)로 돌려 지원하였다. 비록 DANTI의 인권 문서에는 최근 발생한 인권 유린 사례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증거의 부재가 인권 유린의 부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차 경고한다.

1996년 미 의회는 인권 유린에 연루된 군조직(security force units)들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일절 금지시키는 리어 법안(the Leahy Law)을 통과시켰고 행정부 역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6년에 입수된 미 정부 문서는 미국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어 있는 콜롬비아 군조직을 실제로 지원했음을 밝히고 있다. (contradicting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had assured Congress to the contrary in 1994) 리어 법안이 일부 원조 계획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킨 했지만, 1998년에 이르러 1994년 이래로 중단되어 왔던 콜롬비아 군사 지원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 또한 제공하고 있다. 수혜 당사자인 콜롬비아 군조직이 인권 유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기록)가 불충분하다는 미 행정부의 결정 때문이었다.

마약 퇴치보다는 게릴라 토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콜롬비아 군에 대한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콜롬비아 군은 1999년에 마약 퇴치 대대(battalion)를 창설했다. 미 특수부대의 훈련을 거친 이 군조직은 외견상(명목상)으로 마약 퇴치에 복무하는 집단이다.

1980대 이래로 미 행정 관리들은, 미국이 또다시 게릴라 소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회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마약-반군” 개념을 유포해 왔다. 콜롬비아 군 관리들 역시 마약 밀매상이 곧 반군이라는 개념을 조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마약 밀매상과 게릴라는 그 정체성도 구별되거나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다.

마약 거래상과 게릴라는 종종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함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한다.

많은 게릴라들이 세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각종 사업들을 비호하듯 농민들의 코카인 재배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군의 동맹 세력인 준군사 조직의 수괴들이야말로 자신의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마약 밀매를 부추기고 있는 장본인들이며, 워싱턴 포스트지마저 샘퍼(Samper) 전 대통령이 마약 밀매상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하였다. 게다가 2000년 1월에는, 보고타에 거주하는 한 미군 사령관의 아내가 헤로인 밀매 혐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마약 밀매상들은 상대를 불문하고 결탁하고 보는 것이 오늘의 세태다.

미국 관리들은 자신들의 단계적 확대 정책(policy of escalation)이 “플랜 콜롬비아”를 지원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위시한 평화 과정 및 경제 발전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反)마약 대책은, 화학 물질로 인한 농지 및 삼림 지역의 낙엽화 현상과 농지와 가축,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포의 결과를 초래했다. ■

군대폭력과 군의문사

李惠淑(國家有功者 故 國軍 朴賢雨 母/全國軍暴力犠牲者遺家族協會 會長, deskpro@netsgo.com)

1. 머리말

‘全國軍暴力犠牲者遺家族協會(略稱 全軍協)’는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들의 모임으로서, 軍服務 중 ‘本人 重過失에 의해 感電死’했다는 아들의 死因에 의문을 제기, 명백한 ‘他殺’을 ‘自殺’로 造作하는 軍當局에 맞서 建軍 50년 만에 最初로 軍疑問死 眞相糾明을 이루어낸 ‘故’ 朴賢雨 母 李惠淑을 主軸으로 1998년 12월 7일(月) 設立되었습니다.

國家有功者 ‘故’ 朴賢雨는 1998년 7월 20일(月) 08:20경 상관께 업무 보고시 同期兵들을 대표하여 군대내 비민주적 폭력행위를 보고하고, 16:00경 상관의 지시로 ‘진술서’(참조: 별지 1)를 작성하여 제출한지 불과 두 시간여 만인 18:10경 또다른 상습구타자인 古參兵士에게 감전사를 위장한 방법으로 살해당한 후, 19:31 ‘철원길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당국은 ‘故’ 一兵 朴賢雨의 사인을 ‘자살’로 조작하기 위해 사건 현장부터 훼손하고 고인의 사체를 국군일동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한 후 비로소 21:05경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3:55경 국군일동병원 영안실에 당도한 유족에 대하여 고압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순직처리 회유 및 강제부검 협박과 비디오 촬영 불허 등 유족의 진실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일병 朴賢雨의 ‘군폭력 피해 보고’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였습니다.

‘故’ 一兵 朴賢雨 遺家族이 군당국의 조직적인 隱蔽・縮小・造作・歪曲・懷柔・脅迫에 맞서 一戰을 不辭하고 死因糾明에 나선 결과, 사고 발생 3일 후인 1998년 7월 23일(木) 17:50경 5부합동조사로 사고현장인 6사단 청성식당 지하 보일러실에서 열린 제3차 현장검증 당시 ‘故’ 일병 朴賢雨 母 李惠淑은 공개적으로 殺害犯 金允京 상병 自白을 錄取하여 他殺의 증거로 확보한 후 ‘故’ 上兵(追鉞) 朴賢雨 靈前에 謝罪하도록 조치하였으며, 1998년 11월 9일(月) 軍事法院에 대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원인은 폭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살사고로 처리했던 잘못을 저질렀다.’는 國防部長官 千容宅의 증언(참조: 별지 2), 1998년 11월 10일(火) 陸軍第3野戰軍司令官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구타사고가 수사상의 착오로 인하여 단순 自殺事故로 확인되는 오류가 발생’되었다는 第3野戰軍司令官 吉亨寶 大將 증언(참조: 별지 3), 1998년 11월 11일(水) 國防部・合同參謀本部에 대한 국회국방위 국정감사 당시 ‘6사단 사고처럼 구타에 의한 사망이, 자살로 조작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國防部長官 千容宅의 증언(참조: 별지 4)을 확보함으로써, 진급 불이익을 우려한 지휘관들의 은폐・ 축소・조작・왜곡 행위 및 초동 수사시 군수사관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수사상의 착오로 인해 단순자살로 종결지어진 모든 군의문사에 대하여 진상규명 및 정당한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故’ 國軍 朴賢雨 유족은 國家有功者 ‘故’ 國軍 朴賢雨의 의로운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 그동안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한 군폭력 희생자들의 사인을 민간 차원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하고 ‘故’ 國軍 朴賢雨의 유지를 받들어 군폭력 근절에 앞장서 더 이상 군에서 억울하게 생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 가슴을 멎게 하는 반인간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범죄를 근절하는데 남은 생애를 다 바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전군협 회원 중 군의문사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면 해서 이미 고인이 된 아들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명에 회복’을 이룰 수는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고인이 되어 자신에게 씌어진 ‘자살’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어버이로서의 애틋한 애절한 사랑 표현인 동시에 도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을 군폭력에 희생당한 유족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뱃속 깊이까지 절절히 느끼기에 이러한 가정파괴를 막기 위해 생업을 전폐하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및 군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군복무 중 당한 부당한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피해사실을 신고 받아 군당국에 협조를 구하여 보직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군폭력 피해사례를 수집한 후 그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관계당국의 주의를 환기시켜 군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 앞 집회를 개최하고, 군내 사망사고 조사 활동으로 군의문사 진실 규명 및 군의 의식 전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 자격은 군폭력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 군폭력을 근절시킬 사명감을 갖추고 본 협회의 회칙 준수를 약속하는 자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1. 3. 17.

全國軍暴力犠牲者遺家族協會
國家有功者 故 國軍 朴賢雨 母 會長 李惠淑

2. 군대폭력

■ 군대내 폭행건수

- 국방부 자료 : '98년 2,068건, 99년 9월까지 1,440건,
- 육군 : '91년 478건, '92년 387건, '93년 568건, '94년 720건, '95년 993건, 2000년 605건
- * '91년에서 '95년까지 5년동안 3,146건의 구타행위(년평균 629건)

部隊內에서 구타·가혹행위가 있어 사고가 났더라도 부대 지휘관이 승진 보직 등에 영향을 받을까봐 이것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자 은폐·축소·조작·왜곡을 시도하고 그래서 실재는 위의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반에서 은폐된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폭력·상해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 군폭력 인권피해 유형

-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군기 확립을 내세워 구타
- 계급 때문에 인격을 모독하고 이유 없이 구타
- 학력, 가정환경에 대한 자괴지심으로 구타
- 지역감정으로 인격을 모독하며 구타 및 가혹행위

- 휴가 복귀시 무엇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구타
- 하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아 갈구는 행위
-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
- 고문관 취급을 하며 집단적인 따돌림
- 탈영 및 자살을 부추기며 구타·가혹행위
- 성폭력 및 성추행

■ 군폭력 피해 사례

○ 1997년 2월 8일에 육군 청성부대 조익성 상병이 휴가를 나왔다가 고참들 때문에 도대체 군생활이 너무나 괴롭다고 하면서 고참들 원수를 좀 갚아달라는 요지의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사건

○ 1998년 7월 20일 육군 청성부대 박현우 일병이 08:20경 상관께 업무 보고시 동기병들을 대표하여 군대내 비민주적 폭력행위를 보고하고 16:00경 상관 지시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지 불과 두 시간여 만에 또다른 상습구타자인 고참병사에게 감전사를 위장한 방법으로 살해당한 후 자살로 조작되었다가 유족의 노력으로 타살임을 진상규명한 사건

○ 육군 5사단 36연대 6중대 근무 중 중대장 정모 대위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함모 일병과 이모 이병에게 강제로 라면 9개를 먹이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15회 실시해서 이를 견디다 못한 이모 이병이 '99년 1월 28일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한 사건

■ 군폭력 근절 대책 마련 시급

○ 자식을 군에 사병으로 보낸 부모들은 한시라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혹시나 상급자에게 매를 맞거나 시달리고 있거나 앓나 하면서 늘상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안전하게 복무하고 兵役의 義務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군에 갔던 자식이 무사히 돌아와서 군 입영 전보다 더욱 성숙한 젊은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환경이 자리 잡힌다면 병역기피는 사라질 것입니다.

○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기합 줄 경우 가정과 교육현장 등 체벌이 금지된 환경에서 성장해 자존심과 자의식이 투철한 젊은이들이 군에 와서 열차려 받고 상관으로부터 구타와 모욕적인 언사를 받을 때 감당할 심리적인 태세가 안 되어 있음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군대내 폭행은 곧바로 군 기강을 저해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이 확대될 경우 각종 의문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군폭력 구제수단으로 소원수리 등의 제도가 있으나, 소원에다 자기의 여러 가지 군생활에 대해 솔직히 써내면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 필체까지 검사하여 오히려 더 엄한 기합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여 왕따시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소원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군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인 신분을 노출시켜 신고인인 피해자로 인해 헌병 및 검찰 조사 등 부대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집단따돌림으로 군생활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 군내 구타와 안전사고가 사라진 병영문화가 필요합니다.

폭력이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영, 총기난동, 자살 등 제2의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결국 將兵의 士氣를 저하시켜 군의 전투력까지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휘관들이 구타 가혹행위는 근절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 폭력·상해사건이 발생할 때는 은폐된다든지 용서되지 않고 철저히 조사되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군내 구타사고 예방의 관건은 각급 지휘관, 특히 대대급 이하 지휘관의 지휘 통솔과 부대관리 능력,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달려 있느니 만큼 각급 부대 지휘관이 감찰검열과 소원수리제도, 사고신고 전화 등을 지혜롭게 운영하여 구타·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군폭력을 근절시키려면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자 및 관계자에 대하여 계급과 직책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며, 구타사고 다발 부대 지휘관에 대하여는 진급시 불이익을 주어 구타·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내무반은 일제시대 개념으로 수용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공간이고 자기 문화의 공간이고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휘체계상의 기합을 받거나 하극상을 하거나 그런 나쁜 요소로 구성된 수용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50여 년 동안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 의문사가 생기고 군 기사사고가 생기고 또한 하극상이 생기고 내무반 생활에서 많은 갈등구조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반생활 개선 등 명량한 병영생활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여 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자살을 왜 했는지 그 원인행위가 어느 정도 밝혀져도 유족이 장례를 지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살원인 제공자를 영창에 잠시 보내는 식으로 적당히 처리해 버리지 그 원인 제공자가 중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폭행·가혹행위·인격모독·성추행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원인 제공자는 엄중 처벌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 사병들이 일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라기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안보가 대한민국의 평화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내는데 얼마나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지휘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대내 성범죄 현황

군인들의 성 관련 사건 보고에 따르면 현역 장병의 성범죄 건수는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강간 244건, 동성간의 성추행 등 133건을 포함해 모두 666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폭력과 성추행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군내 동성간의 성추행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병자 및 자살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므로 성범죄 발생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여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 형태

- 성행위 흉내내기 30.2%
- 신체 애무 15.9%
- 성경험담 발표 14.5%
- 동침행위 12.7%

- 자위행위 9.5%
- 성기 애무 3.2%
- 오럴섹스 1.6% 등

■ 성폭력-성희롱 피해 발생장소

- 내무반 66.7%
- 근무초소 12.7%
- 목욕탕 보일러실 화장실 4.8%
- 훈련시 막사내 3.2% 등

■ 군대내 정신병 발생건수

○ 국방부 자료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전군에서 장병들의 정신병(간질 · 우울증 · 정신 분열증 등) 발생건수는 모두 8283건(외래환자 8283명, 입원환자 3986명, 의병전역자 1344명)

탈영사고 현황

■ 연도별 탈영인원

- 국방부 자료 : 1992년 1560명, 1993년 1692명, 1994년 1776명, 1995년 2283명,
1996년 1949명, 1997년 2023명, 1998년 1986명, 1999년 1462명,
2000년 8월 현재 815명

○ 탈영사고는 주로 군 복무 1년 미만의 초년병에 의해 선임병의 가혹행위, 군 생활 부적응 및 여자와 가정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매일 다섯 명 정도가 탈영하여 범죄인이 된다고 합니다. 탈영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초년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병영상담실을 운영하여 병영내 악습척결 및 군복무간 애로사항 타개, 인내심 함양을 위한 철저한 훈련과 정신교육, 엄정한 군기 확립과 병행하여 내무반생활 개선 등 명량한 병영생활 여건 마련에 지휘관심을 경주하여 탈영으로 인한 제2·제3의 범행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다른 군폭력 피해

■ 군에서 종교상 이유로 인한 항명죄로 전과자가 되는 사병의 숫자가 일년동안 약 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개년간 육군에서 종교상 이유에 의한 항명죄 사건수는 1996년 344건, 1997년 447건, 1998년 513건, 1999년 562건, 2000년 261건으로 이중에 평균 3~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소가 되었으며, 또 평균 2~3건을 제외하고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종교상 이유에 의한 항명사범은 '여호와와 증인'교 등의 신자들로서, 이들은 군에 입대한 후 신병훈련소에서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휘관의 집총명령 및 군사교육명령을 거부하여 군형법 제44조 소정의 항명죄로 입건 처벌되고 있으며, 대상관 범죄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으나, 종교상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 군법무관들에게 가장 쉬운 사건은 바로 이 종교상 이유에 의한 항명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아니하며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도 전혀 항소하지 아니하는 아주 순조로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 부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거의 일률적으로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고 있다는데 군 복무기간을 의식해서인지 모르

겠으나 왜 하필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군이 선고해야만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징총거부로 인한 항명죄 사범은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국방의 의무와 종교의 자유가 상충하는 부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은 조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종교상의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징총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우리 군이 종교를 지키려는 젊은이들을 3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하고 평생 전과자의 낙인을 찍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하도록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 독일의 경우 헌법상 양심상의 이유로 징총을 거부했을 경우 징총거부권(제4조제3항)이 법적으로 인정돼 있고 병역의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안적 해결방법’으로 군무원으로 종사하게 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도 또한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민간역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위가 아랍국가로 둘러싸인 이스라엘도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우도 매년 500명씩 ‘여호와의 증인’ 등이 징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관행적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역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의 병역기피 등이 문제가 되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진정한 종교적 이유로 인한 징총거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겠지만 장기간(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의 1.5~2배)에 걸쳐 군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지체부자유자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록도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역무를 개발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군의문사

■ 현역 군인 사망현황

* '94년 이전 자살사고 연평균 250여명, '95년 이후 자살사고 연평균 100여명

* 1997년~2000년 6월까지 현역 군인 사망인원 826명중 자살은 약 40%에 해당되는 334명

○ 군당국이 자살로 결론지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에서 제시하는 자살원인은 부대관계가 30%, 개인관계가 70%로 部隊關係는 통제된 병영생활에 대한 부적응·복무염증·처벌우려·구타 등이고 個人關係는 가정환경비관·여자관계·신병비관 등입니다.

○ 매년 우리 국군이 적과 교전해서 200여명이 사망한다 해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지휘관들이 문책 당하고 군작전에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도 아닌 때에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고사든 군에 가서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군 복무자의 안전은 군이 책임져야 함에도 말입니다.

구 분	1980년대	1990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6까지
사망인원	연 692명	430명	522명	383명	408명	273명	248명	218명	87명
자살인원	?	?	?	100명	103명	92명	102명	98명	42명

○ 군에 자녀를 入營시키고 부모 입장에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군대 건강하게 잘 마치고 제대해서 환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는 자기 자식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사고로 인해 몸을 다치지는 않았는지, 또 수많은 자살이라든지, 타살이라든지, 구타를 당해 죽는다든지, 또 사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의문사, 이런 것들이 부모들의 걱정을 더하게 합니다.

○ ‘국민의 군대’라면 군을 믿고 자식을 맡긴 부모들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군에서 확고히 생명에 대한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꽃다운 나이에 군에 보냈더니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을 때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 모병제도 아닌 징집제 하에서 다 장성한 아들, 특히 요즘에는 자녀가 돌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국방의 의무에 보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자살’ 했다고 하면 기함을 토할 일입니다.

○ 남들 다 하는 군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약하게 자살했다는 데 대한 자괴감, 부모를 배신했다는 절망감, 자살에 대한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이웃의 눈길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절망상태에 빠져들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들의 죽음에 대해 너무도 많은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미 수사는 ‘자살’로 종결지어졌고, 부실한 초동수사 덕분에 자살이 아님을 입증할 길은 묘연합니다. 이래서 의문사로 남은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고사든 군대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에서 책임지는 체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謹 國防部 弔

■ 현행 사망사고 발생시 군 수사의 문제점

- 사망사고 발생 후 수사 착수 전 이미 자살 예단
- 사망동기 짚 맞추기 : 내성적 성격에 의한 군복무 염증, 가정환경 비관, 여자문제 비관 등
- 사건현장 훼손, 초동수사 엉망
- 유족이 모멸감을 느끼도록 무례하게 행동하고 군사기밀을 내세워 비협조 또는 협박
- 상급기관에 민원제기시 1차 수사기관으로 또다시 사건 이송

잘못된 군 수사 사례

○ 1996년 10월 22일 강원 양구군 남면부근 산에서 짜리베기작업 도중 실종되어 ‘여자문제로 인한 탈영’으로 단순탈영 처리되었던 육군 2사단 공병부대 소속 表宗郁 일병은 부대 인근에서 무장간첩 잔당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군수첩에 ‘이제 일병을 달고 군생활에도 적응이 되었지만 원인 모를 한숨과 동경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 신세타령을 해야 하는지 내자신도 한심하다. 무한히 펼쳐진 자유...’라는 글을 남긴 채.

○ 이 사망사고 역시, 군의 신뢰도를 매우 실추시킨 사건입니다.

군 수사 개선 방향

- ① 수사관들의 사망사고 처리교육 강화(지침, 규정 마련)

현재 경찰에서는 변사사건에 대하여 변사사건 처리요령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따라 경찰관들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경찰관의 경우 그 규정의 내용이 부족하므로 군사법경찰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초기 사고현장을 끊기지 않고 완전하게 담은 비디오 촬영 및 복사본 제공을 의무화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수사상황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휘관들에 대한 사건현장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상황을 완전히 촬영하여 가족들의 의문점을 해소시키고 수사기관이 상황을 은폐 또는 조작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비디오 촬영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의 일부가 끊겨져 있거나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유족에게 복사하여 제공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③ 경찰의 경우처럼 사망사고 전담반(감식반) 운용

현재 경찰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전담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감식반을 두어 이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군사법경찰관의 경우 이러한 전문인력 없이 일반 군사법경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사인 규명에 필수적인 증거를 놓치기 다반사이며, 그로 인해 유족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의 경우에도 군단이나 군사령부 정도의 부대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수사인력을 충원해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이를 전담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수사결과 발표후 수사기록 공개

현재 사망사고의 수사가 끝나면 수사기록은 군검찰로 송치되는데, 유가족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아 유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를 복사하여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인지 전문가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유가족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⑤ 검찰관의 실질적 수사지휘 확립

군사법원법 제264조에 의하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의 경우 검찰관이 필요적 검사를 하게 하고 검여부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검찰관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보충적으로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 현실을 보면 사망사고 발생 후 헌병이 수사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는 등 검찰관의 수사지휘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병들은 직업군인들로서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 조사시 은폐·축소시키는 폐단을 없애려면, 헌병대를 기무사처럼 국방부장관 직속기구로 독립시켜 군지휘관의 사건처리 개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진상규명의 길을 모색하여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의무복무자인 검찰관에게 수사지휘를 실질적으로 하게 하면 조금 더 공정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의혹을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의 대처 방법

(1) 초기단계의 증거수집

- ①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자료나 유품을 모두 챙길 것
- ② 사체 사진 촬영
- ③ 사고현장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④ 부대원 및 군관계자 진술 반드시 녹취

(2) 부검시

- ① 전과정 비디오 및 사진 촬영
- ② 부검 직후 법의군의관의 부검 소견 반드시 녹취
- ③ 유족측 참관인으로 법적·의학적 지식을 갖춘 법의학자나 변호사 입회

(3)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노력

군의문사 조사 기관 및 단체

o 국방부 특별조사단

1980년대 이후 군의문사 진상조사를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각 군을 통제하여 조사실명제로, 제기된 민원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하여 그 의혹을 전부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였으나,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 특조단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사실상 군의문사 진상규명 불가능

o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민주화운동 관련 군의문사

o 인권실천시민연대(약칭 인권연대)

o 전국군포력희생자유가족협회(약칭 전군협)

o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발생 배경

o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사망원인이 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군 지휘관들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군 지휘관들이 사건처리에 개입해 사건원인에 대한 조사의 축소·은폐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o 자살에 대한 입증이 없을 시 의문사나 변사로 결론을 내려야 함에도 군이 복무염증 또는 가정환경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등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유를 만들어 자살로 처리하는 이유는 진급 불이익을 우려하는 일부 지휘관과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문책이 따르지 않는 자살로 처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되는 군부대내 사인재조사 진정서 가운데 기존 수사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전적으로 군에서 져야하는 명백한 이유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육군·해병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

o 우리 대한의 아들들은 군복무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신검을 통과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했습니다.

o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 하에서 부모들은 나라의 부름 받아 국방의무를 수행하러 입대하는 아들을 격려하며 우리 군을 믿고 부모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 군에 맡겼습니다.

o 군은 폐쇄적인 공간이며, 지휘 계통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휘·관리·유지되는 조직입니다.

군내 사망사고는 군의 지휘·관리 체제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현상이므로 구성원 관리를 잘못된 데 대한 공공적인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군은 사고예방의 책무가 있습니다.

○ 꽃다운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자살' 또는 '본인 중과실에 의한 사고사'라 할지라도 군에 오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이며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군에 있는 것입니다.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 건군 53년간 자살로 종결지어진 모든 군의문사가 수사상의 착오로 인해 단순 自殺事故로 확인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정지를 수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은 군의 수장으로서 군수사관의 능력부족으로 초동수사에서 자살로 종결지어진 군의문사와 진급 불이익을 우려한 지휘관의 은폐·축소·조작·왜곡 행위로 인해 자살로 종결지어진 군의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군의문사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 국방부장관은 '공명정대한 指揮權 행사와 信賞必罰 등으로 사기 높고 기강이 확립된 강한 군대를 육성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더 이상 군의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국방부 특조단의 재조사 문제점

○ 육본검찰관 '전면 재조사라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국방장관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이다. 수사기록만 보고 그냥 중요 참고인만 만나가지고 조사기록 확인하고 이상 없는 것으로 끝내는 그게 전면 재수사예요. 솔직히 말하면.....'

○ 전면재조사를 한다지만 과거에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조사하는데 어떻게 자살로 처리한 것을 타살이다, 자살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능력이 뛰어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해도 자기 조직에 불이익이 되는 그런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군의문사 전면재조사는 국방부장관이 국민에게 스스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그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 현행 사건의 경우 고의로 현장이 훼손된 상태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수사관의 임무이므로 십수 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바로 오늘 발생한 사건처럼 인식하고 수사기록상의 자료를 활용해 철저한 전면재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 은폐·축소·조작·왜곡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관의 능력이 부족하면 의문사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보존된 수사기록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의 안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건의 실체규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현장 및 사고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외에 수사관 판단으로 기재된 기록은 일체 무시하고 철저하게 전면 재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의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진상과 처벌결과도 공개하고, 과거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인과 유족에 대하여 정중히 예우하여야 합니다.

○ 의문사 전면재조사 과정에는 유가족과 유가족이 선임한 변호사, 자문위원 등의 수사기록 열람 및 현장 접근을

보장하고, 유가족이 제시한 각종 자료의 적극반영 및 필요시 군 이외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국방부 특조단은 의문사 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제반 의혹 해소를 위해 유가족의 수사 기록 열람 및 현장 접근을 보장하고, 유가족이 제시하는 각종 자료의 적극 반영과 필요시 군 이외의 전문 감정기관을 활용하는 등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간 시일경과에 따른 사고현장의 변형, 일부 수사기록의 부재, 전역한 관련 참고인 소재 파악 곤란 등 법적·현실적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유가족의 고충이해와 국방개혁 차원에서 조사실명제 등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군협에 신고되는 사항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을 불허하고 전역자들의 경우 소재파악이 안되었다거나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4. 맺는 말

현행 체제(징집제)를 유지하는 경우

- ① 입대가능한 모든 인원을 입대시켜 군복무기간을 24개월 이하로 감축
- ② 신체적 특성에 맞는 병무를 판정하는 수단으로 신체검사

신체검사 등위 판정시, 모든 입영대상자를 소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은 소총수도 필요하고, 사무병, 이발병, 취사병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조직체이니 눈이 나쁘고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여도 누구나 군대 내에서 자신에게 맞는 병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군복무를 기피했거나 미필한 사람은 공직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 병역면제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평생동안 굴레와 가시방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경우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에 부응하고 병력의 정예화로 군 전투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경제적 부담능력 가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장애우와 징병제

- 군복무가산점제를 중심으로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jungkangja@hanmail.net)

군복무가산점제 대응 활동

□ 제대군인 가산점제란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채용 시험시 만점의 5%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점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 군미필자의 공직진출을 제한함으로써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

□ 대응활동

- 여성계 - 폐지요구('94~)
- 행정쇄신위원회('94) - 가산점 비율 하향조정 방안 제출 - 관계부처반대로 보류
- 여성관계부처 정무제2장관실('94) 이후 여성특별위원회('98)-가산점비율 완화. 폐지요구
- 병무청('98) - '제대군인 지원법'시행령 개정.
 - 병역법개정 (군·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 호봉승급 의무화)
- 여성계('98) - 제대군인지원 법률안 중 군복무가산점제 위헌 소송청구.

□ 위헌소송의 배경

-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 보상책 강화('98.5)
- 97년말 병역비리 사건이후 병무비리 척결,군가산점제 강화정책 등장-군필자 우대정책을 공공부문, 민간부문으로 확산. 군필자에 채용, 임금, 승진의 3중 수혜 부여
- 여성고용조건 악화
- 경제위기이후 98년은 여성우선해고 등 성차별적 구조조종, 여성실업 급증

위헌판결 요지

□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인가, 단순히 입법 정책적 제도인가

-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39조2)”
 -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가하고 있는 한 의무이행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불이익 처우란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우선 근로기회 부여.(헌법32조 6) 규정에 제대군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 편의상 가산제는 제대군인에 준용하였을 뿐 헌법상 근거가 될 수 없다.

- 가산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취지하의 입법 정책으로 도입된 것에 불과하다.

□ 평등권을 침해했는가

· 가산점제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제대군인이란?

①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남자.(퇴역·면역 포함)

② 상군예비군 소집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된 남자.

③ 지원복무를 마치고 퇴역한 여자.

· 비제대군인이란?

① 군복무를 지원하지 않는 여자.

② 징병면제 처분을 받은남자.

③ 보충역.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남자.

우리 나라 남자 대부분은 제대군인 ①과 ②에 해당하며 전체 남자 인구의 80%가 이에 해당된다. (현역 입영 대상자 81.6~87%) 또한 우리 나라 여성 대부분은 비제대 군인①에 해당된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는 전체 남자 대부분에 대해 전체 여자 대부분을 차별 취급한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

· 군가산제는 신체건강한 남자와 병역 면제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 군가산제는 현역복무·상군 예비역자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 의사, 전문연구요원, 실업기능요원)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 공무담임권을 침해 했는가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25조)”

-능력과 적성에 따른 균등기회 보장 조항(능력주의 기회균등 정신)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무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단,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연소자, 여성 보호,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전몰군경유가족의 근로기회보장, 여자, 노인,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의무규정 등

장애우와 군가산점제

□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군가산점제가 위헌인가

· 장애우 고용실태

15세이상 재가장애인 992,500명

경제활동장애인 435,500명

장애인 실업율 27.4%(20대초 47.6%)

장애인 고용율 공무원 5.15%

정부출연기관 1.275%

정부투자기관 0.79%

민간기업 0.46%

30대재벌(338개사) 0.25%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이미 불평등구조에 놓여있는 집단의 불이익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잠정적 우대조치이다. 따라서 이를 군가산점제와 등치 시킬 수 없는 제도도입의 취지, 기능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군복무가산점제 폐지운동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

□ 판위헌결에 분노한 군필자들의 사이버테러

- 통신망,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남성집단의 여성에 대한 폭력
- 위헌소송운동의 주체였던 여성단체와 이화여대에 대한 조직적 사이버테러

□ 언론의 선정성 보도

· 군복무가산점제의 문제점, 개선책, 정책방향 등에 대한 객관적 보도태도 상실, 기득권층=남성과 사회적 약자=여성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

· “감히 군대도 가지 않는-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군복무 수혜자인-여성들이 군제도를 건드리다니”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여자가 군대가라” 등의 보도를 통해 여성에 대한 극렬한 혐오 표현

· 위헌판결이 능력위주와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외면한채, 오히려 군필자들이 사회불만세력화 될 수 있으며 병역기피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판결이었다는 논조 유지-보도방향을 군필자 보상문제로 끌고 감

□ 폭력적, 소모적 군제도·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 ‘징병제도를 반대하는 모임(징반모)’ 등의 출현

신성국방의무 뒤에 가려진 군복무로 인한 피해의식의 표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공론화

그러나 군복무가산점제 논란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군제도·군문화 개선의 움직임은 합리적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여성계가 제안한 군제도·문화개선 목소리는 현실성 없는 방어책으로 치부되고 있어 징병제, 폭력적 군대문화 개선 문제를 여성운동이 부각시키고 끌어안고 가기는 어려움

- 시민단체, 평화단체의 지지, 동참이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군복무가산점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 초기 군가산제의 개선, 폐지 요구가 시작될 때부터 관련 부처간 정책조정 실패

· 위헌 판결후 군복무가산점제를 국가봉사경력가산점제로 대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반대에 부딪혀 실현시키지 못함

- 반대이유-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를 그대로 안고 있는 반헌법적 조치
 봉사의 진정한 목적 침해
 현실적용의 문제점

군복무가산점제 폐지운동이 남긴 숙제들

군가산점제 폐지운동은 노동시장 진입상의 기회균등 요구였다.

기회균등 요구는 곧 우리 나라의 병역제도와 마주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의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 징병제하의 군복무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나?

· 어떤 보상을, 누가

☐ 병역제도의 주요 정책변수인 병역자원, 병역구모, 복무기간의 개선에 여성운동이 개입해야하나?

· 지원병 위주의 징모혼합제, 완전지원제로 전환가능 한가? ☐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나도 군대에 보내달라!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인터뷰하러 가던 그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곳은 날씨였다. 조금 늦게 도착한 나는 약속장소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로비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김형수씨(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 한신대 대학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형수씨를 연결해 주었던 다른 사람을 불러낸 후에야 로비에 다른 사람들과 앉아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목발을 짚지 않고 휠체어를 타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앉아 있는 그를 나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모르는 사이지만 쉬 만나지리라 생각했던 나의 예상은 첫 대면에서부터 빗나가버렸다.

얘기를 나누기 위해 학생회관 내 카페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형수씨는 자신보다 빠른 내 발걸음을 생각해서 거의 뛰다시피 옆에서 같이 걸어주었다. 그 날 연세대 학생회관 3층에서는 ‘전국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 총회가 있는 날이어서 그런지 학생회관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소속 회원인 듯한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비장애인 남성 4명이서 힘겹게 들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단의 높이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게다. 얼마 전 TV에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한 가수가 계단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 했던 것이 떠올랐다. 난 많은 부채감에 휩싸였다.

1. 안정적 사회진출에서 군가산점제라는 높은 벽

정강용 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공채 시험에 응시해서 82.2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는 당시 가산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응시자 가운데 차석을 차지한 높은 점수였다. 하지만 결과는 차석의 높은 점수를 받은 그는 탈락하고, 실제 시험 점수 78.33을 받은 군필자가 그를 밀어내고 가산점 5%를 더해 83.33점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시험에 응시한 동기생 한 명 역시 81점을 받고도, 가산점 5%를 더해 86점으로 전체 순위 5등의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후 군가산점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 13시간씩 공부하는 강행군을 한 그는 다음해인 92년과 93년에 다시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가산점으로 인한 불합격이었다. 93년의 경우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그는 점수로는 합격자 45명중 28등이었지만 가산점이 적용되자 133등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 김도현, 군가산제 비대위 '낮은시선' 자료집 중

장애인들이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진출의 폭이 좁은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시험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공간인 것이다. 특히나 요즘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직을 희망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하지만 위의 정강용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가산점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벽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나 선배들이 취업을 할 때 공무원을 많이 생각을 해요. 공무원은 장애인에 대한 할당제도가 있고 또 상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머리에 먹물 들어간 장애인이라고 하면 다 공무원을 한 번

씩 고민을 해보는데 대번 걸리는 게 그 군가산점제도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9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5점이거든요. 45점을 플러스 해준 거니까 100점을 맞아도 못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95점을 맞아도 플러스 45점 해버리니까 140점이 되 버리죠.”

하지만 어렵게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은 만만치 않았다. 특히 장애인들은 따라 할당제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고민은 여성들은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강한 건 사실인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획득할 수 있는 논리가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할당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완제도가 있는데 왜 헌법소원을 하느냐라는 것에서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헌법소원이 누구한테 당사자한테 문제가 있다 없다 간에 그 당사자가 군가산점제로 이익을 보던 안 보던 간에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보수적이고 차별적이라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하는 법이고 바뀌어야 할 법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리다툼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서, 차별의 문제로서, 인권의 문제로서 접근을 해야 되고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고민되었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할당제 등의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 기관에서조차 이러한 할당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그 후

별다른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정말 뜻밖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성과 신체에 장애가 있는 남자 등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했던 당사자들도 그리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그 이후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했던 사이버 성폭력과 위헌 소송 제기 당사자들에 대한 위협이 한동안 자행되었다.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여성들은 갖은 욕설로 씨어진 메일과 위협전화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것은 실제로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폭력이었고 그 일로 인한 상처는 지금까지도 그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사이버 상의 성폭력도 주로 여성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자행되었던 것처럼, 예상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에게는 별다른 협박이나 위협은 없었다.

“전화가 왔어요. 형수야 빨리 경호원 붙여라. 실지로 여성들은 그 정도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다들 저를 여자인 줄 알았대요. 다들 여자인줄 알고 나중에 토론회에서 장애인인줄 알았대요.”

“여성이 장애인보다 더 만만한 거 같아요.”

군가산점제도 위헌 소송이후 진행되었던 토론회나 논쟁들은 그다지 건설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이버 상에서는 너무나 쓰레기 같은 욕설과 논쟁을 가로막는 남성들의 집단행동으로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그 속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확장해 보려는 시도들은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역의 의무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부과되어 힘들게 군생활을 마친 군필자들과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고 싶었다. 군가산점제도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님을 보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함을 그리고 새롭게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싸워나가자는 제안은

이제 조금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조심스럽게 꺼냈다.

“실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나서 판정이 되고 나서 상당한 반대 여론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반응을 안보였던 것도 그것은 일종의 화산폭발이 있는 후에 화산재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걸 놔두면 사라질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가산점제 하면서 군대간 친구들, 남자들 많이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군가산점이 여성들하고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이고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걸 감성으로 바꾸면 그래도 싫다. 자기가 공무원시험을 안 봐도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헌법소원을 하면서 설득해야 되고 획득해야 될 이론들은 설득되어야 될 것들은 정부도 아니고 이런 이성과 감성에서 오는 남성들의 피해의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엄마가 아들을 군대보내면 이 엄마는 아들 편이에요. 누나도 아들 편이죠. 그리고 장애인 아버지도 자신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비장애인이면 군가산점제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잘 못하죠.”

“군사제도라는 것이 우리 나라 20대 청년들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어떻게 한 귀퉁이를 무너뜨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고민이 되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죠. 여성단체들이 장애인들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한 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조용했던 것도 그렇잖아요. 막 열 받은 실연 당한 여자한테 너 울지마, 울지마.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일단은 사회가 거기에 대한 불만이거나 그런 것들을 다 표출하고 난 뒤에는 아까 제가 감성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감성이 다 표출된 뒤에는 남는 건 이성밖에 없으니까 그 때부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감성이 많이 죽었거든요. 좀 논리적인 논쟁, 토론할 시기가 왔다. 딱 보고 있어요. 언제 내가 발언을 해야 하나. 군가산점 문제는 많이 바뀌었고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여전히 많은 20대 남성들을 정치적으로 휘몰아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 할당제는 할당제고 군가산점제는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건데. 모든 사람이 국가 공무원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또 국가에서 일정정도 책임 있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상조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삼중적으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세미나 하면서도 매일 그거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고민하지 말자. 공무원시험 본다는 비장애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티오를 주면 안되느냐. 모든 남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확대하지 말고. 아니면 군대에서 국가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 다든지. 얼마든지 제도보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건 또 수궁을 해요. 문제는 감정이예요. 감정. 이게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국가가 군대 갔다온 사람들을 보상해 준다는 하나의 상징에 대한 상징적인 치료제거든요. 자기가 공무원시험을 안 봐도. 그런 부분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거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도 문제 될 것이 없죠. 차라리 그렇게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 모아서 정부하고 싸워야 되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군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들도 금기시 되어왔다. 남북의 분단과 끊임없는 적대적 감정의 재생산으로 국가안보는 우리 민족의 존립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였고 이것을 위해 국방력의 증강은 높은 국방비와 전 국민적인 병영화로 대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제기일 수 있었기에 금기시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의 화해무드와 IMF 이후 경제적 불안은 이러한 높은 성역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국방력의 증강이 문제가 되었으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군사비를 줄여 사회복지비로 환원하라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이러한 목소리 중에는 당연히 군대 자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것은 군가산점제도 헌법소원 판결 이후 불거졌는데 너무나 말초적인 본전생각의 남성들이 그저 여성도 군대가라는 감정적 대응으로 치달으며 현재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당연히 군가산점제도는 군대가서 뺀이친 남성들을 위한 실질적 보장제도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 현재의 판결 이후 군필자 남성들이 보인 말초적 반응을 보면 군대라는 문제가 단순히 제도나 보상의 문제만으로 논의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별 남성들이 군인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군대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가부장적인 군대문화의 문제나 군대내의 복지의 문제, 정치,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로 언급되어왔다. 그런데 군가산점 위헌판결 이후에 이러한 군필자 남성들이 보인 반응에서 군과 관련된 논의들은 거시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이 직접 체험한 군대경험으로 환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입을 다물어라’ 혹은 ‘우리가 얼마나 뺑이쳤는지 아느냐’ 등의 눈물로 호소하는 류의 글이 통신 공간을 도배하고 있는 것에서 군대의 경험의 유무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험이었느냐 현역이나 방위나 해병대나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 사이에서 차이와 위계를 만들어낸다. ‘군대를 다녀와야만 사람된다’와 ‘군대를 다녀오면 바보 된다’는 두 가지 언설들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써먹으며 이렇게 군대경험은 다시 가라면 죽기보다 싫지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가치있는 일로 구성되며 남성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3. 비단 군가산점제도 뿐만이 아니다

군대를 가지 못해서 겪는 폭력들은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별다른 뺑이 없는 대한민국의 청년이면 모두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의례 군대 시절의 경험은 빠지지 않는 애깃거리가 된다. 그것은 군대 시기뿐만이 아니라 입대 이전, 입대 이후로 이어지며 군대를 경험하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힘들었던 절절한 얘기를 들으며 일종의 부채감같은 것이 형성되며 그것에 따른 피해의식과 박탈감, 소외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 나라 사회에서 남자가 군대 안 간다. 인간취급 못 받아요. 사회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전체 군사적인 문화에서 소외되는 것이 강한 거고 실제 농담 삼아 우리 행정병 시켜 줘.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거든요.”

“대학 내에서도 군대가고 하면 환송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한 친구일수록 감정이 나오는데. 너는 군대안 가서 좋겠다는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 때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는 감정적인 문제고 어떻게 문제제기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이제 제대했다고 하더라도 전부터 군대 얘기밖에 없는데 그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끼어 들지도 못하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뭔가 힘든 일을 시킬 때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고 얘길 하겠죠. 군대는 사회적으로 통과의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기제만 된다면 다들 군대가고 싶어해요.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하니까요.”

막상 군대에 입대할 시기가 되면 군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조차도 ‘너는 좋겠다. 군대 안가도 되서...’라는 말을 하며 군대 입대 자체를 굉장히 자신의 삶에 있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군대를 다녀와서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군대경험은 대부분 반인권적이고 억압적인 기억들보다는 TV의 모프프로그램에서 함께 군생활을 했던 전우들이 나와서 그 시절의 기억을 따뜻하고 재미있었던 경험으로 구성하는 것처럼 재미있다. 힘들고 고달팠던 기억들조차도 ‘억압적이었다’가 아니라 ‘잘 견뎠다’이다.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인 통과의례를 치르고 그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군대 혹은 군대제도 자체의 문제로 얘기되지 못하고 모두 개인이 감수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4. 차라리 군대에 보내달라

쓰레기 같았던 사이버 공간에서 억울하면 여성들도 군대가라는 제안(?)은 비아냥거림처럼 들렸다. 하지만 군대에

갈 수 없어서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징병제가 없어지고 새로운 대안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떨치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들은 차라리 군대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비록 부자유스러운 몸이지만 행정처리 같은 일은 너끈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누구는 군대가고 누구는 가지 않아서 차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되 각기 처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방의 의무로 대신하자는 것이다.

“징병제도 어쩔 수 없다면 모든 국민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뭐 장애인들에게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딸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투입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는 장애인 개개인들의 문화적인 발언, 군사문화에 대한 발언들, 장애인도 군대가자. 군대가게 해줘. 편의시설 해주고 경사도 깔아주고, 해주면 우리 같게. 그런 거거든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어필 할 수 있는 기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면 간다. 여성들도 그래. 여성들은 충분히 임신에 대한 능력을 보호받으면서 여성성을 보호받으면서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으면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회가 사실 할 말이 없죠. 사실.”

“어차피 모든 국민들에게 징병제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물론 징병제 자체를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처럼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충분히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꼭 그렇잖아요. 전방부대를 책임진다고 해서 군사가 이기는 게 아닌 것처럼 여자도 공익근무요원처럼 교사가 많이 딸린다든지 보육사가 많이 딸린다든지 하면 그런데 투입이 되면 되는 거고 장애인들도 실제로 장애인들이 총칼은 못 들지만 컴퓨터도 다룰 수 있고 다 하거든요. 다 하잖아요. 전략연구소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직능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우리 나라의 군사문화는 그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오로지 20대의 건장한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군사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지 않고 군대자체도 분명히 차별적인 거예요. 사실.”

5.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다

물론 전술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이렇게 징병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꺼내놓는 건 현재 장애인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항상 장애인들은 사회에 이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거두어야 하는 보살핌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은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다. 보살핌의 대상으로써 모두가 군대에 가야만 하는 짐을 그냥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회에서 당당한 한 몫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보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의 창출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소득의 소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의 대상이지 창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장애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어떤 업무에 봉사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합의를 이룬다면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능력껏 우리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구나. 봉사를 하니까 우리가 책임을 저야 되겠다. 이런 거지. 지금 뭐 장애인과 더불어 삽시다. 이런 어떤 수세적인 관점은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수세적인 관점이 없어져야... 사실 전략적인 연구나 지형적인 연구 이런 거는 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권력이 이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장애인들은) 사회에 자기를 많이 끼워 맞추는 스타일이 강하지 그것들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없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경험들, 자기 존중감을 많이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실제로 제가 군가산점을 장애

인이 공식적으로 걸었던 이유도 나를 한 번 보고 모델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게르니카(연세대 장애인 동아리)도 장애인 주도적으로 오버를 했던 것도 사람들이 이게 권린지 이게 자기의 것들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거든요. 학교 들어왔어도 학교 그냥 받아줘도 고마워해요. 학교는 고마운 존재예요. 장애인들한테 있어서, 고마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교육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말해도 고마운 존재예요. 고맙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 전까지. 그거를 보여주는 작업을 참 많이 했었죠. 그것이 말로써 쉽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강하죠. 그래서 저희 동아리나 장애인 쪽에서 이런 명제가 있어요. 비장애인 10명을 설득하는 것보다 장애인 1명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정도의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군가산점 소송도 피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요즘 사회에 누가 군가산점 했다고. 물론 갈구긴 하겠죠.”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의 시각은 장애인들이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해왔다. 보살펴주는 입장이고 보살핌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은 이렇게 주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6. 자신의 얘기들

그렇게 주체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형수씨는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이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교육과 집안 내의 문화적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한다. 항상 도움 받아야 하고 보살펴 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똑같은 인간으로써 조금 불편한 신체를 타고 난 똑같은 인간으로써 부모님은 그를 키웠다. 학교 교육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받았다. 이렇게 자란 그에게 소수자인 장애인들이 살기엔 너무나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임에도 훨씬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하는 억울한 일로, 차별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로 다가왔을 것이다.

“저 자체가 운동천데. 운동의 결관데... 저는 이쪽 장애인이나 이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싫었어요. 왜냐면 아니까 문제가 뭔지도 알고 해결책이 뭔지도 알고 어떻게 움직이면 해결되는지 다 아니까. 20몇 년 동안 장애를 갖고 살면서 부모님들과 이런 것들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헤쳐갔기 때문에 알죠. 뭐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 쪽 쳐다보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쳐다보려고...”

“우리 부모님이 더욱 더 운동하시는 분들이예요. 우리 집안 자체가 각자 책임지자 예요. 완전한 자유방임. 그게 더 무서워요. 아들이 데모하면 이유가 있겠거니 잡혀가면 잡혀갔겠거니. 설명하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머니도 뭐 저 키우면서 투쟁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학생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머리를 잘 굴려서 오버하지만 마라. 잡혀갈 때 잡혀가고 전경이 때릴 때 때리지 부화뇌동하지 마라. 이런 게 저희 어머니의 그거지 뭐 오히려 적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빠르시니까. 이해가 빠르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판단을 잘 하시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니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니가 그만큼 선배들한테 받았으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때가 온 거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몸 상하고 이런 걸 안타까워하시지만 개념적으로는 더 독려하시는 편이에요. 우리 한국의 장애인의 특성이 뭐냐하면 자기 개인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뛰어들지를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뇌성마비면 뇌성마비 재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사회 참여적인 게 많은데 한국의 부모들은 일단 자기 자식만 먼저 재활이 되고 가능해지면 입을 닦아 버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교육의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집안 자체의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장애인 김형수가 김형수고 둘째 아들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장애인 김형수가 김형수예요. 보통의 엄마들이나 부모들은 쉽사리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꿈은 변치 않거든요. 내가 장애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어머니도 같죠. 같은데 개념이 다르죠. 장애는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지 뭐 비장애인에 가깝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성들이 여성해방을 하려면 남성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사장도 하고 이런 거하고 지금의 일반 장애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의식구조는 똑같은 거거든요. 장애인들이 대학교 와서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가 그거예요. 장애인들이 대학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아실현이나 학문적 욕구가 강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신분상승이라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대학이라는 거 자체 그리고 석사, 박사, 교수라는 거 자체 그리고 학점이라는 거 자체가 나의 모든 결점과 약점과 모든 것들을 커버해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저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릴 때부터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해수욕장 데리고 가면 해수욕장 잘 안 데리고 가잖아요. 니 맘대로 놀아라. 목발 짚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쪽 교육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날 안 부끄러워하니깐 나도 나를 안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징병제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을 혹은 집단을 만났다.

실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우리의 운동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함에서 무척 괴롭고 아팠다. 또한 징병제의 문제가 단순히 제도나 보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사주의 전반의 문제라고 할 때 그의 표현대로 어디서부터 구멍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이며 계속 이어질 고민일 것이다. 나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아직까지 군사안보와 국방력 증강이라는 성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철벽같은 성이라도, 그것은 꼭 존재해야만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되더라도 그것에 의해 고통받고 차별 받는 현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찌찌한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화해무드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군사력 중심의 안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져 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 소송을 계기로 군대 문제에서 항상 타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도 자신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구멍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군사제도와 징병제에 짓밟힌 양심

홍창욱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pporco@hanmail.net)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거부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에 대한 반감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성인이 된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양심이라니? 대체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다면, 의무를 받아들이고 군대를 간 이들은 양심이 없는 이들인가? 혹은 병역 거부자들 전체에서 ‘이들’에게 유독 ‘양심’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되뇌이게 되었다.

이후 이들을 다른 입을 거리를 접하면서 ‘양심적 거부자’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어있으며 이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과 제 7일 안식교등의 종교단체들이 이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여호와의 증인만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양심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

양심은 개인의 정신적 판단과 인격적 존재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양심형성-결정-실현을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한국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받을 수 없으나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제한 받을 수 있다. 즉, 이것이 표출되는 상황이 특수한 법적 이익(징병제와 같은)과 상충하게 되었을 시에는 보장되지 못하는 내심의 자유이지 현실의 자유는 아님을 의미한다.

분단상황인 한국에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에 준하는 다른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의무자세를 지우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병역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에 해당하는 징역을 살게된다. 신성한 의무라고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20세 이상의 남성이면 누구나 져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에 준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부자는 징역에 대한 전과를 가지고, 평생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워치타워협회는 현재 1400여명 정도의 신도들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1) 사회계약

의무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가 제약되어야 하는 논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의무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무를 전제할 때 우리는 개인과 타인, 이들이 함께 이룬 공동체를 떠올리게 된다.

루소는 약탈적 전쟁상태에 직면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확장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보호받는가를 인간 존재 방식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장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각 개인간의 계약이 필요하고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양도

한 대상이 바로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다시 양도받은 것을 개인에게 보장하는 식으로 되돌려준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양도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일정한 교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전면적 양도의 조항이 부과하는 평등의 기능으로서, 자기자신을 위해 희망하는 것을 타인을 위해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선 자기자신을 위해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타인을 위해 어떤 것도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테면 내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병역을 희망한다면 동일하게 이는 타인을 위해서도 희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 특정한 의무가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신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시킨다면 이를 거부한다면, 단지 거부한 이가 다른 이에게 병역의무를 요청할 수 없을 뿐이다.

반대로 병역의무를 했거나 할 개인은 자신이 희망한다고 해서 집총을 거부하는 이에게 자신과 동일한 의무를 희망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는 거부자를 위해 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거부자에게 피해를 주지않을 다른 동일한 의무를 희망할 수는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2) 법적 조화

위의 논리를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양심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 의무를 놓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1) 이익형량의 원칙, 2) 규범조화적 해석등이 있다. 이익형량의 원칙은 일정한 규제가 양심에 대하여 가하는 부담과 그 규제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양심규제의 이익 내지, 필요성을 측정해야 한다.

규제의 이익이 절박하거나 압도적인 경우, 면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심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는 다른 방법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에 의해 국가의 세속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징병을 통한 국가이익은 양심상의 반대론자를 강제집행하지 않고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근무제도를 예를 들 수 있다. 독일은 BGH(독일의 최고 유권해석기관)는 국민의 집총거부권을 인정하여 집총거부권을 주장하는 이에게 대체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법률사이 갈등을 최대한 줄이며, 양자의 타협을 추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규제의 이익은 징병제도 자체의 안정적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대체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이를 활용하거나 군대기피의 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경험의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징병제도내의 불평등이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체봉사제의 도입은 군대의 위상과 운영전반에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병력인원확충이나 군대기피를 위한 활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종교적 징집 거부자는 년 150여명이어서 병력인원확충에 문제는 없으며, 소방관· 환자관리등· 재해복구등의 고된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에 군대기피에 대한 우려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도부터 대체근무를 시행한 대만에서는 국방부의 예상과는 달리 지원자가 미달되었다고 한다.

진짜 vs 가짜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개인 인권에 대한 직접적 억압상황인 ‘종교적 양심 거부자’의 문제와 더불어서 징병제도가 재생산하고 있는 또다른 폐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일상적 통제메커니즘과 배제에 대한 접근이 그러하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을 이유로 징병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 단체들이 이단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살상 거부에 대한 양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종교적 ‘이단’의 논리가 ‘진짜/자신의 종교’를 내세우고 이에 따라 다른 신념들을 ‘가짜/타종교’로 평가내리고 배제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소수자 배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단논리의 하나인 집총거부의 신념은 로마시대 초기 그

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유포된 것이었는데, 로마의 국교통합화 이후로 기독교가 대중화되면서 사라진 것이다.

사실 이러한 통제와 배제는 ‘종교적 양심거부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지만 군사제도를 둘러싼 배제와 불평등은 일상속에서 항시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사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상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신체적 등급분류에 따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군대생활을 했거나 면제된 이들 혹은 여성들은 사회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일상속에서 배제되거나 항상 듣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양심’개념의 확장을 위하여

미국은 양심의 자유를 종교영역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이는 양심이 인간 ‘개인’의 내심이자 자기존재의 근거라고 할때 양심이 표출된 형태를 종교형태로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welsh판례(1970)는 역사와 사회학 분야의 학습 후 전쟁은 악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된 경우,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진실되고 심오한 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면제 자격을 인정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여호와와 증인이 말하고 있는 집총거부권은 종교적 교리이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리가 폭력과 살상에 반대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다. 고로 양심적 거부권은 종교인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반전권이나 살상거부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80년대 전방입소 거부투쟁의 경우와 같이 비록 종교적 양심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동족간의 전쟁준비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양심또한 징집거부권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동일한 양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이들이 병역의무를 행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재생산되는 사회적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0년이 넘는 세월은 결코 현실의 적과 이에 대비키 위한 물질적 군대만을 재생산한 것은 아니다. 정작 군대와 징병제의 효과는 가상의 적을 상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나 표현을 제약하는 집단적 규율상황의 연장이며 이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규율상황의 재생산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선배가 후배를, 남자가 여자를,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정상인이 비정상인을, 진짜가 가짜를 배제하고 억압하는-에 이바지하며 이는 개인의 양심을 집단과 조직의 논리로 대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집단적 규율상황에 동참하는 이들은 조직논리의 가해당사자이며 보상자인 동시에 바로 자신의 양심에 대한 피해자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병역특례제도 관련 초벌 보고서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alterite@jinbo.net)

□ 병역특례제도 개요

○ 병역특례제도로 알려진 대체복무제도의 본래 명칭은 전문연구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의 목적에 대해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지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문연구요원은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면허)기준에 따라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토록 하여 국가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병무청

○ 그 동안 병역특례대상분야는 방위산업, 전문연구활동, 공중보건 등 극히 제한된 범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91년 병역법개정과 함께, 공업, 에너지,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됨. 당시 정부가 내건 취지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업종 산업체가 겪는 인력난을 징집대상인력 중 잉여인력을 투여해 해소한다는 것이었음.

○ 현역대상자의 경우 학력별로 요구되는 특정한 기술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편입대상으로서 매해 병력수급상황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며(현역병 징집 후 남은 잉여인력 만큼 편입) 3년 간 복무하게됨./보충역소집대상자의 경우 특별한 기술자격증 없이 지정업체에 취직하면 편입되는 것으로 인정되며(제조 및 생산분야, 건설공사 현장분야, 선박승선분야 등) 인원제한이 없고 28개월간 복무하게됨.

□ 병역특례와 관련된 문제점.

○ 산업기능요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인격, 노동권 침해

- 병역특례제도상 지정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면 특례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다시 군대에 입대해야 함 (지정업체에서의 3개월 근무를 현역 및 보충역 1개월로 환산한다고 함. 예컨대, 2년간 특례 지정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되면 거의 2년간 다시 군 생활을 해야함.

- 이 같은 제도로 악용해 사측은 해고라는 암묵적 위협을 바탕으로 낮은 임금과 과다 노동, 인격적 심리적 침해를 강제할 수 있으며, ‘해고=군대’라는 인식이 강한 병역특례 노동자들 또한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인터뷰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음.

“금속산업분야 특례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산업연수라는 이름으로 보통 1년 동안 대기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킨다. 결국 4년 동안 복무하는 셈이다.”

“특례기간동안 판짓(회사 눈에 벗어나는 일)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벤처업체들은 야근, 철야가 일상적인데, 월급은 쥐꼬리만하다. (월급 작다고 불평하면) 군대안가고 여기서 이렇게 호강하는 것 만해도 그게 어딘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일 이판 식으로 하면 당장에 군대 보내버린다고 호통...”

○ 노동조합 활동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

-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는 징집 대상자들도 해고의 효력을 다두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병역특례 대상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

- 최근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멀티메이타시스템 노조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멀티메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은 벤처업체 최초의 노동조합으로 2000년 2월 9일 조합을 설립했음. 2000년 5월경 쟁의를 통해 임금문제와 불법 파견업무²⁾에 대해 문제제기 해 단체교섭이 타결됨. 그러나 11월 28일 조합 간부 4명이 군사훈련(병특노동자들에게도 복무 중 일정기간동안 군사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받는 동안 병역특례선정 취소 신청을 하여 11월 28일자로 병역특례업체 취소 허가 처분을 받게됨. 회사의 취소신청 이유는 경영악화와 사업전환이었으나 2000년 상반기 재무제표와 상업등기를 확인해보면 멀티메이타시스템은 매출과 수익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정보통신업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라는 지정사업성격 또한 바뀐 것은 없었음. 노동조합DMS 사측의 병특취소신청을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원직 복직 투쟁을 진행중임.

○ 지정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서의 비리가능성

- 지정업체는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될 수 있으나, 병역특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지정업체 선정은 병무청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병무청의 고유권한이 매우 강력함.

- 지정업체가 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 해소 및 세무상의 이득이 있으므로 많은 회사들이 지정업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IT)계통의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인력확보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해마다 병무청에 지정업체 선정을 무더기로 요청한다고 함.

→ 결국 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비해 실제로 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기업들은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정업체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뒷거래”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해 필요인력을 충원하고 있기도 함. : 인터뷰를 통해 들은 사례를 소개하면,

“대기업은 근본적으로 지정업체가 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대기업이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 지정업체로 선정된 B라는 중소기업과 모종의 거래를 맺어 B업체가 병역특례자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평상시에는 A회사에서 일하다가 병무청 조사가 나오면 그 때에만 B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미고 ...”

“지정업체로 선정된 산업분야와 무관하게 돈 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원래 파견업무는 불법인데, 말 안 들으면 당장 군대가라고 협박하니 어쩔 수 없이 한다 ... 나중에 병무청에서 적발되면 우리들만 손해본다. 파견업무를 강요한 기업은 벌칙금 얼마에 지정업체 선정 취소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다시 군대에 끌려가야

2) “병역특례직원들이 파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체가 병역특례업체여야 하면, 파견시 이를 병무청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파견이 이루어졌을 경우 병무청에 의하여 발각이 되면 병역특례 노동자에게 그동안 얼마의 시간을 병역특례로 일했느냐에 상관없이 바로 입대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불법 파견을 나갔다는 이유로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노조는 직원보호와 법적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법 파견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파견을 철회시켰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 미움을 받더라도 그나마 불법 파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수많은 회사들에서 힘없는 병역특례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파견을 나갈 수 밖에 없으며, 직장을 옮겨야 하는 부담감과 자기 외의 병역특례직원들에게 피해줄 것이 두려워 쉽게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다. 3년 동안 병역특례복무를 마친 사람 중에는 나중에 불법 파견업무가 발각돼 다시 군에 입대한 경우도 있다.“

○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장치 부재

- 병역특례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되는데, 실제 복직 관련 심의가 진행된다면, 지역 노동위원회에서 3-4개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5-6개월, 즉 대략 1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함. 물론 1년여의 기간동안 징집은 당하지 않으나, 많은 병역특례자들이 해당 1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신분상으로도 불안한 기간이 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것이 사실임. 또한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패소할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 이후 구체적인 조사를 위한 초벌보고서임. 인터뷰에는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조합, 병역특례로 대체복무를 진행한 시민 1인이 응해주었음. 참고자료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병무청(2001.02), 「병역특례 근로자 “차라리 군대가겠다” “시사저널 (95.5.4)임

한국의 병역, 군사제도변혁에 희망이 있다!

군의 자주화와 민주화의 긴 여정을 중심으로

김삼석 (군사문제연구가, hiarmy@orgio.net)

이솝우화 - 목마른 사자와 멧돼지

더운 여름날 목마른 사자와 멧돼지가 작은 샘터로 왔다.

그러나 누가 먼저 물을 마시느냐 하는 것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은 어느 한 쪽이 죽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둘은 마지막 결전을 위하여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독수리들과 까마귀들이 몰려와 그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사자와 멧돼지는 싸움을 멈추고 “우리들은 독수리 떼나 까마귀의 먹이가 되기보다 차라리 친구가 되는 것이 좋겠어!”라고 말하였다. 작은 샘터는 휴전선을 사이에 군사분계선이다.

이제 젊은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독수리 떼나 까마귀 떼가 서서히 물러가고 남북의 멧돼지와 사자가 친구가 될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가 가히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이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10.12일 북미공동성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단과 전쟁으로 얼어붙은 지난날을 한꺼번에 녹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징병제를 필두로 비로소 허물어지기 시작한 한반도 군사구조의 변혁의 과정을 군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군의문사를 비롯한 군인들의 자주적인 인권문제가 있다.

“집이 부산인데 아들 놈이 강원도 첩첩 산골에서 총으로 자살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 처참하더라구요.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부대 측이 무조건 자살이라고 하면서 빨리 화장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살을 믿을 수 없어 죽은 현장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봐야 뭐하냐’며 보여주지 않고, 그럼 같이 근무한 소대원이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하면서 어서 자식이나 데리고 가라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화장터로 가려했지만 부대 쪽에서 시신을 싣고 나올 차도 내주지 않더라구요. 어찌 어찌해서 관광버스를 불러 그놈을 싣고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관광버스를 불러 자식을 데리고 나왔지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올까 생각하니 이 나라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전국 군 폭력 희생자유족협회에 접수된 180여건(2001년 2월 말 현재)의 군의문사, 군 폭력 희생자 사건은 줄어들 줄 모른다.

한 해에 577명의 꽃다운 젊음이 피다만 채 꺾이는 것은 일제의 내무반 규율과 미국식 군사제도인 기만적인 병역제도가 뒤섞인 폐쇄적인 권위주의의 악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2년 동안 쌓여온 뿌리뽑히지 않은 악습이 군대 곳곳에 남아 있다 보니 그 유족들은 오죽하면 ‘이건 우리 군대가 아니여’라고 한다.

또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최근 부대 안에서 정훈교육 교재로 쓰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조그마한 녹색수첩을 살펴보자. 모두 12가지 항목으로 80쪽 정도가 된다.

1. 세계는 불타고 있다.
2. 북괴의 전쟁 도발 위협
3. 북괴의 위장 평화 공세와 대남 도발
4. 실패한 체제, 신음하는 북한 주민

5.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
6. 북괴군은 우리의 주적, 싸워 이길 수 있다.
7. 주한미군은 왜 필요한가?
8. 통일의 참다운 뜻은 ?
9.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10. 좌경용공세력의 실체와 위험성
11. 민족 수난의 역사와 국방의무
12.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

이들 교재는 비디오로도 만들어져 대대급은 물론 중대까지 비치되어 있다. 정훈교육의 핵심은 책이나 비디오의 내용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가에 맞춰진다. 따라서 사병들에게 매주 바뀌는 주제별 교육내용을 달달 외우게 한다. 급기야 서로 경쟁하듯 암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방은 누구인가, 남북한 전력비교 등을 주입시키고 늘 우리 군은 우세하다고 교육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로 전시에 미군이 예비탄 70%를 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등장하는 것이 한국군대의 교육현장이다.

군 의문사를 막는 방법은

52살 먹은 한국군대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사병들의 아름다운 꽃이 피다 말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군의문사라도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부대 안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군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한 편에서는 일부군대에서 구타 없는 분위기를 만든 선임병들의 전통을 잘 이어 나가야 한다. 자기가 선임병이 되었을 때 구타근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 그래도 구타가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하고 구타자의 징계와 타부대의 전출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휘관에게 구타근절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을 대비해 주변의 동료사병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많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뒷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 사람의 증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료사병은 현장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과 면담할 때 언제든지 양심적인 증언을 하도록 한다. 부대 안에서 양심적인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군인들도 포함되어야) 시급하다. 휴가 때 군 폭력의 상황이나 인권침해사례를 인권단체, 신문사, PC통신, 인터넷에 제보하고 꼭 상황의 시작과 끝을 육하원칙에 따라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갖자.

한편 인권단체들과 유족은 군내 사망 사고만큼은 민·군 합동의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수사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또 현재 논의되는 국가인권위원회보다도 특별조사권을 가진 시민단체와 국회로 이루어진 강력한 인권위원회가 그 대안의 하나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망사고 진상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에서는 제일먼저 군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뒤 사단장은 사고 즉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알려 국회진상조사단이 즉각적으로 사고현장을 방문하도록 해 현장조사와 사고원인, 증인조사를 충분히 해 유가족이 사인을 납득하고 동의할 경우 장례를 치른다.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명예회복, 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희망의 군대를 향한 몸짓

거대한 공룡 한국군대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10.12일 북미공동성명에 이은 머지 않은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민족이 자기민족의 문제로 대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쾌거였다. 신문 1면 머릿기사엔 ‘이제 전

쟁은 없다.'라는 아기 손바닥만한 만한 크기의 글씨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다. 남한의 군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주적'인 인민군 육해공군의 사열을 받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서로 힘껏 껴안은 사건으로 남한 사회전체는 충격에 빠졌다. 5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제일 충격에 빠진 곳은 국방부였다. 주적이 혼란에 빠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렇수록 국방부는 한민족 차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두 번 세 번 잘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자는 분위기와 공동선언에 대한 전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과감하게 '주적개념'을 없애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족인 북한의 한 병사는 이제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는 병역의 의무라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이다. 누구보다 군대의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과 남한이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적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사병들에게 “북괴군은 우리의 주적, 싸워 이길 수 있다.”며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한 한국군대의 징병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

한국군대의 징병제도의 반통일적인, 반민주적인 폭력성이 군의문사와 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지금도 이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군대의 징병제도는 단순한 병역문제가 아니다.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는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함께 하는 정치·군사적인 핵심문제로 평화통일로 가는 길 한가운데서 중요한 군축문제중의 군축문제다. 병역감축과 무력감축, 국방비감축과 함께 우리사회를 민주적으로 개조하며 모든 부분을 장상적으로, 제자리로 돌리는 중요하면서도 평범한 주장이다. 그 노력의 한가운데 있었던 군인들을 살펴보자.

1980년도부터 살펴 본 사병과 장교들의 자기권리 찾기 운동

한국의 군사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양심적인 사병장교들의 몫이다. 양심적인 사병장교들의 20년간의 자기권리 찾기 운동은 가시밭길이었다. 양심적인 군인들은 80년대 들어 하나, 둘 감옥으로 향한다.

먼저 한국판 '드레퓔스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아람회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황보윤식 공군대위, 김 난수 육군대위가 감옥으로 향한다. 아람회의 '아람'은 김 대위의 딸 이름이며 당시 검찰이 아람이의 백일 잔치에 참가한 동료, 선후배, 이웃 모두를 '반국가단체 구성원'들로 둔갑시킨 웃지 못할 사건이다.

97년 5월 18일 살림터 출판사에서 나온 정치범 명예회복협의회회의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을 참고해보자.

“내가 강원도 최전방 GOP군무 설 때 어느 날 밤 철책선을 따라 경계순찰 중 나는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운동주의 별’을 발견했다네. ‘조그만 땅덩어리, 그나마 분단된 조국, 같은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며정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렇다.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저 광활한 만주벌판 끝 하늘밑에서 군무하며 참다운 군인의 길을 걸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하였지.”

김 난수대위(ROTC 15기)! 73년 소위에 임관한 뒤 서울 근교 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군무를 시작해 중위로 진급해서 강원도 최전방 GOP군무 중에 참다운 군인의 길을 걸으리라 맹세했다. 그러나 1981년 8월 27일, 5공 초기 대표적인 반국가단체조직 사건인 아람회 사건으로 구속된다. 그는 몇 년 동안 감옥 안에서 쇠창살사이로 ‘운동주의 별’을 보아야 했다.

공군대위 황보 윤식! 그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로 긴급조치 9호에 걸려 옥고를 치르다 79년 10·26사태 뒤 석방되었지만 81년 7월 16일, 같은 아람회 사건으로 구속된다. 당시는 대전 공고 교사였다. 83년 12월 23일, 2년 5개월 동안의 투옥생활을 마치고 ‘형집행정지’로 성탄특사로 출소. 현재 인천생활협동조합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아람회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진실은 계속된다. 사병에게도 한국판 드레퓔스는 계속된다. 계속되는 의문사건과 함께 5공화국 당시 군대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자주적인 움직임이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서서히 이겨내면서 일기 시작했다.

1982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고등 군법회의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이태곤, 최태식 상병은 ‘진실의 아들’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1982년 11월 27일 민주구국투쟁 선언문이라는 유인물 60매를 제작하여 소속부대 화장실에 부착하였다는 죄목이었다. 최씨는 재판에서 “사병의 현실인식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진술한다.

장교, 사병들의 양심선언운동

폐쇄된 군의 울타리에서 양심선언을 한다는 것은 일단 용기가 필요하다.

당시의 양심선언 사병들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세대사병인 셈이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군인이었을 뿐이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슴이 뜨겁게 반인간적인 군사제도의 변화를 바랬고 나라와 군대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 몸을 던진다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당시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지금 뒷사람의 길이 되고 있다.

광주에서 전두환의 계엄군에 총부리를 들이 댄 김 병장의 거사가 있었다면 서울에선 방위병 김종태 이병이 있었다! 군대를 둘러싼 객관적 조건이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좌절과 함께 푹푹 얼어붙었다. 서울에는 80년 6월 9일 계엄군이 거리거리마다 살벌하게 눈알을 부라리는 죽음의 지대 속에서 군사정권의 노골적인 집권욕모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한줄기 불빛이 타올랐다. 군사정권에 온몸을 불사라 항거하는 노동자 출신 방위병 김종태³⁾이었다. 불꽃으로 80년대 변혁운동의 물꼬를 죽음으로써 터놓은 국방노동열사였다.

김 병장과 김종태의 죽음을 넘어 87년부터 시작되는 군인·전경들의 양심선언은 저항을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의 입장을 지키면서 반민주적, 반인간적 군대질서의 민주적 개조에 초석이 되고 있다. 1987년 이후는 자주를 노래하고, 민주를 춤추며, 통일에 생명을 거는 위대한 전통을 마음속에 간직한 이 땅의 청년·학생들이 기나긴 단절의 역사를 닫고 군대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시작했음이 이어지는 양심선언들을 통해 확인된 해였다.

〈표11〉 군인양심선언일지⁴⁾

3) 박래균, 「죽은자와 산자의 대화」, 「연세」 지 30집, 1990 겨울, 연세대학교 266쪽

4)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90인권주간 자료집」

계급	성명	소속	사건개요	현상태
중령	임택준	육군본부	88.7.7 대통령에게 군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위한 31개항의 고발문 제출, 군인권의 무법자를 고발	
대 위 중 위 중 위 소 위 소위	이동균 김중대 이청록 박동석 원관경	30사단 중대장 30사단 소대장 " " 30사단 공사장교	89. 1. 5 한국 기독교회협의회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명예선언을 하고 이후 구속	기소유예로 석방되어 불명예 제대로 전역
일병	정광민	수방사 헌병단	88. 6. 8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연세 대학생회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수배중.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구속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등으로 4년을 선고받고 복역 뒤 출소
일병	박길남	보병 제35사단	88. 1. 7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군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민주군대쟁취투쟁위에서 활동 중 구속	복역 뒤 출소
일병	김상철	공군 제1전투비행단	88. 11. 18 한교협 인권위에서 군의 비리 폭력 등을 척결하자고 주장 후 민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에서 활동 중 구속	
일병	서영완	보병 제28사단	89. 4. 17 한교협 인권위에서 군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양심선언 후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에서 활동중 구속	복역 뒤 출소
이병	장문걸	공군본부 (방위병)	89. 6. 3 전대협에서 군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군의 비리와 폭력을 폭로하는 양심선언	
이병	류범희	보병 제32사단 (방위병)	전대협에서 양심선언	
상병	서준섭	군수사령부	90. 7. 27 전대협에서 국군조직법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10만 이하로 병력 감축 등을 주장하며 양심선언	
이병	윤석양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받고 90년 10월 4일 한교협에서 인권위에서 양심선언	복역 뒤 출소, 결혼
중령	손대희	육군 사단대대장	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두고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사퇴촉구 양심선언	군무지 무단이탈 및 정치관여금지위반으로 1년 형을 선고. 98.10. 1 일 가석방으로 풀려나

양심선언 사례에는 아래 양영진 열사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울부짖는 경우도 있고, 수배생활과 고문, 투옥을 각오하고 군무지를 이탈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는 동안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혹은 감옥을 각오하고 국민들에게, 전우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뜨겁게 말하려 했는지 생생히 알아보자.

이 시기 87-89년도에 방위병들의 정치적 자살과 군대내 민주화투쟁의 바람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국군인, 방위병들의 조국통일과 군자주화,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 수 있다.

양영진 이병을 기억하는 사람은 장재완 일병을 잊을 수 없다. 양영진·장재완 추모사업회가 부산에 있다. 방위병장 일병(부산대)도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그는 87년 3월 27일 부산의 가까운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다. 방위복무

중 버스에서 잃어버린 가방(조직에 관한 자료, 문건이 들어있었음)이 보안대로 넘어가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죽을 때까지 조직보안에 관한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한달 후인 10월 10일에는 양 영진 이병(당시 22세)의 투신자살을 접해야 하는 비통함이 있었다. 지리산 오른편에서 태어난 ‘문학청년’ 양 이병은 어머니를 애통하게 그리며 시를 많이 썼다. ‘어머니의 손톱’은 대표적인 시다.

꽃처럼 몸을 던진 양영진 이병

1988년 조국순례 대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 다니던 양영진 이병은 8월 8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8월 10일 입대하였다. 하지만 그 해 10월 10일 부산대 공대 건물에서 스물 두 살의 나이로 몸을 던졌다.

“저의 충구는 언제나 북한 동포, 그리고 남한 민중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형님, 그리고 동지들에게 겨냥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반역의 충구, 패륜의 충구에 의해 저는 가슴에 무수한 총알을 맞으면서 어머니의 편안한 미소 같은 아침 햇살이 퍼져오기를 바랄 뿐이어서 기다렸습니다. 매일 새벽은 찾아오지만 허한 얼굴로 쓰러지는 그리움만 M16소총의 섬뜩한 느낌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자주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참고 견디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인내심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일방적 복종심의 습성을 배양하여 기계적인 현실 체념주의형으로 만들고,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정권에 가장 잘 순응하는 인간형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현 사회 내에서 민중의 자주성이 유린당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군대는 가장 구조적으로 인간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군대조직 해체하라!!...

통일염원 44년 10월 9일 양영진 드림“

그의 죽음은 일제 군국주의 잔재물로 태어나 온갖 비리, 구타, 가혹행위가 횡행하며 수많은 의문사로 얼룩 지워진 군대, 미래를 짊어질 엔 세대 사병들의 건강한 의식을 마비시키는 군대, 온 겨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군 지휘관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한국군대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군대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는 군대 바로 세우기에 대한 책임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온 몸으로 말했던 것이다.

그 뒤 차례로 88년 11월 공군의 김상철 일병, 89년 1월, 4월, 6월의 박길남, 서영환 일병, 장문걸 이병 등이 거대한 군의 부정부패, 비리, 폭력 등을 폭로하면서 민족의 군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전투 경찰 내에서도 불꽃을 터뜨리는 군인들의 양심선언 못지 않게 시위진압 거부와 전경해체를 주장하는 그들의 양심선언이 줄을 이었다. 89년 1월과 6월 사이에 조규봉 이경, 임성호, 유진태, 이하일 일경, 유성호 수경 등 백골단 6명의 집단 양심선언 등이 그것이다. 이같이 89년 상반기는 가히 폭발적인 군경 양심선언(군인 8명, 전·의경 10명)으로 군대와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들의 뜨거운 의지를 국민들과 전우들에게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 88년도에 접어들어서는 군민주화투쟁 바람이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어났다. 88년 4월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지제군」⁵⁾이라는 유인물에서는 사병들의 민족의식을 통한 의식화, 조직화작업의 촉구와 방위병들의 경우 각 지역에서 지역운동과 함께 군을 민족의 군대로 그리고 국민의 편으로 돌려세워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었다.

너희가 ‘전우의 함성’을 아느냐?

5) 자세한 내용은 전교학신문 91년 1월 16일자 「급진좌경세력의 군경침투활동과 대책」 참조

그해 9월에는 현역 군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매국군인 몰아내고 민주군대 이룩하자”는 내용의 ‘전우의 함성’⁶⁾이라는 유인물이 군부대가 밀집한 의정부에 대거 뿌려진 것이 발견되어 군의 자주화,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9월 6일 오후 8시경 의정부 터미널 부근에서 발견된 이 유인물에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충정훈려거부 *동족을 학살하고 정권을 강탈한 매국군인 처단 *분단체제 강요하는 미국축출 *군사대결 조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거부 등의 주장이 담겨있었다.

이 같은 유인물이 대량 뿌려진 것이 확인되자 의정부의 경기 북부 민통련 관계자들은 “오래 전부터 사병을 중심으로 군대 안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있어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앞으로 군의 민주화를 위한 이 같은 운동이 퍼질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양심선언의 형태는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이기보다는 소수의 선도적인, 일회적인 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양심적인 애국군인들이 군민주화와 사회민주화투쟁에 참여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중요한 뜻이 있겠다. 또 다른 하나는 88년도부터는 군 입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싹트면서 ‘군과 병역문제’를 다시 보자는 바람이 불기도하였던 것이다. 그 흐름으로 전국적인 청년학생들의 각급 교지와 단행본 등에서 군 입대에 대한 문제제기, 제대자들의 군 생활체험 등을 위주로 한 논문 20편 정도가 실려진 시기가 바로 이때이며 이들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사병들과 함께 술선수범과 진실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군대로 바로 보기 시작했다. 청년의 황금기를 써먹어 돌아오는 허송세월의 3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군대의 아픈 곳을 고쳐나가는 군복무기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눈을 강조하고 있다. 이 흐름은 이후 90년대 일부 단위에서의 병영학교와 전국적인 강제징집철폐투쟁, 예비역복학생들의 자주적인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개혁투쟁으로 드러난다.

중령의 양심선언과 89년 군 명예선언, 그리고 윤석양

중령이면 사병들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뻘이다. 왜 그런 위치에 있는 군인이 양심선언을 했을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통령께 고발.... 군대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은폐 조작하는데 만 급급, 만일 이러한 군 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역사의 독버섯이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되고 말 것입니다.” (임택준 중령 양심선언문 중에서)

88년 7월 7일 육군 본부에서 근무하던 육사(32기)출신 임택준 중령은 대통령에게 군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31개항의 고발문⁷⁾을 제출하면서 군 인권의 무법자들을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후 군 생활 17년을 타의에 의해서 마감하였지만 많은 후배 장교들과 육사 선배들의 위로와 지지 속에서 양심선언 출신 고급장교로서 군민주화를 향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89년 1월 5일 모진 탄압을 눈앞에 두고 군의 부당한 정치간섭과 불의에 대한 맹종을 단호히 거부한 이동균 대위 등 5명의 초급장교들의 군 명예선언 발표는 우리에게 철옹성으로 보여졌던 군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하였고 이것은 사병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임택준 중령의 양심선언과 함께 장교들까지도 군민주화운동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들은 ‘군 명예선언문’에서 군을 불명예로 이끌어온 정치군인들의 반성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면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육군본부는 1월 9일 이들을 군형법상의 명령위반 및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그 후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원에게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다음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는 파면하고 나머지 장교들은 3개월

6) 「민중의 소리」 1988. 9. 30 일자 6면 참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7) 자세한 내용은 말지 91. 3월호, 184-187쪽 참조

간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애국적 군인들에게 새겨진, 장엄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군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강한 용기와 신념은 군 당국의 고도의 탄압(두 장교의 불명예 제대, 김종대 중위에 대한 89년 3월 16일의 노상 테러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많은 군인·전경들이 집단적이고 대담하게 군대를 바로 세우는 대열에 속속 동참하게끔 하였다.

군대와 경찰을 바로 세우려는 양심선언은 이어진다.

89년 5월 8일, 부산 동의대 사태 진압에 나섰던 황원진 수경을 비롯한 6명의 ‘무시무시한’ 백골단들이 평민당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동의대 사태 진상규명과 경찰의 중립화를 요구하였을 때 재야 단체와 대학가 등에서의 연대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하여 갔다. 그러나 한달 후 89년 6월 8일 경찰민주화와 전경해체라는 민주적 지향과 요구를 앞장서서 실천해오던 전경해체투쟁위원회의 노재학 상경이, 9일에는 연성흠 일경이 각각 연행되었으며 7월 31일에는 양승균 일경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잡혀 구속되었다. 이후 90년 12월 14일, 18일에 연성흠, 노재학 씨는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하였고 양승균 씨는 91년 4월 출소하였다. 양 씨는 87년 1월 8일 전경 사상 최초로 양심선언을 산 증인이다.

양심적인 장교와 사병에 이은 백골단 6명의 집단적 양심선언은 전경, 백골단조직 자체 내에서 집단적 운동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였으며 구타로 날이 새는 전경내부의 비인간화를 거부하는 자주적, 양심적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89년 3월 2일의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 80여명, 9월 1일 인천시경 소속 의경 1백30여명이 집단적으로 ‘시위진압 동원 반대와 인격적 대우’등을 요구하며 가두로 진출한 것 등에서 전경을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는 대담한 행동을 보여 주었다.

90년 가을 한 보안사(현 기무사) 이병이 국방부장관을 물러가게 한 사건이 터진다. 이름하여 ‘윤석양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이었다. 윤 이병도 신세대사병이었던 모양이다. 보안사를 탈출할 때 ‘디스켓’에 민간인사찰자료를 담아 나와 보안사를 두 손들게 했다.

90년 가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활동과 고도화된 녹화사업!

양심적인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정치보복적인 탄압은 “기무사의 대국민 사찰, 강제징집⇒사병들에 대한 기무사의 기초조사 감시통제,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의문사, 군과 관련한 각종 조직사건의 조작, 수많은 녹색인간(프락치)의 창출”이라는 일련의 탄압 순환장치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91년 벽두부터 기무사와 경찰정보기구의 사찰활동, 폭력적 탄압의 휘파람은 그 진가를 발휘하여 2월의 외대생 남현진 이병, 서울대생 송종호 일병의 의문사사건, 4월 15일의 최흥기 이병의 녹화사업폭로 양심선언 등으로 나타나 기무사의 정치보복적 탄압은 설 틈이 없었다.

그러나 기무사의 이 순환장치에 반대해 군의 민주화를 원하는 세력들과 청년학생들은 기무사의 불법사찰과 의문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애국군인과 군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91년도에는 6공식 강제징집을 거부하면서, 모순 투성이인 병역법과 노동악법을 개폐하려는 방위산업체 해고노동자와 강제징집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병역제도개선 요구로 떨쳐 일어났다. 그리고 89년 상반기의 집중적인 양심선언보다도 더욱 집중된 양심선언이 전개되는 91년 4~5월에는 강경대 열사사건을 계기로 민중들의 자주화, 민주화투쟁이 꽃피는 시점에서 같이 공동걸음을 걸어가는 성숙함을 보인다.

양심적인 군인들을 지원하며

불법조직 백골단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강경대열사 사건 이후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공안 당국은 선도적 학생운동과 군사투쟁활동을 빌미삼아 91년 6월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사건으로 52사단 김용명 이병외 4명, 청주대 ‘자주대오’사건으로, 화천 27사단의 권영환 병장의 4명,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연구원 구속사건’(이하 서사련)으로 단기병 이창희의 3명 등 다종다양한 군 조직사건을 전국적으로 만들

어 나갔다.

군 당국의 발표를 요약하면 ‘민족해방활동가조직’사건⁸⁾에서는 이들이 “현역사병으로 군복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과 뒤 군대내의 동료들 대상으로 사상지도 등의 적극적인 군부투쟁활동을 획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청주대 자주대오’사건에서는 ‘학군연계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동료사병들에게 주체사상을 선전하거나 반미 이적활동을 해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또 서.사.련 사건은 그 누가 보더라도 군 당국의 무리수로서 이미 군입대 전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도서를 문제삼아, 학문과 사상의 자유까지 짓밟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악용한 수사기관들에 의해 제대 2, 3일을 앞두고 구속되었던 것이며, 자주대오사건의 고성의 25사단 송재봉 이병의 경우는 입대하자마자 아무런 혐의도 없이 기무사에 의해 구속되는 등 기무사의 불법연행, 고문, 구금 등 불법적 정치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한마디로 군 수사기관이 민족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시기 때마다 병역의 의무를 제물로 삼아 조직사건을 만들어 내, 90년 이후 군의 정치적 개입을 일상적인 위협수단으로 교묘히 활용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

전정 전경, 의경도 주인으로 떨쳐 일어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90년대는 군대와 준군사조직인 전경·의경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났다.

90년 들어 3월 20일 종로서 소속 의경 15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반발하여 집단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고, 6월 2일에는 부산시경 소속 전경 2백 여명이 부대해체 후 타 근무지 배치에 반발, 강력 항의하는 등 대중적 운동은 끊임 줄 몰랐다.

90년 10월 윤석양 사건을 계기로 90년대 군민주화 지원운동의 구심으로 등장한 윤석양 후원사업회(90년 12월 준비위원회 발족)는 양심선언 군인·경찰 출신자들과 그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진영과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해체 기무사!, 쟁취 군민주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각종 군 조직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족들의 법정투쟁을 지원하고, 91년 4월 강경대 열사 사건 이후의 폭발적인 양심선언투쟁을 교훈으로 군민주화 홍보매체와 소식지로서 「군에 의한 민주화 운동 탄압 실태」, 「군경인권소식」 지를 처음 발간하게 된다.(91년 7월 첫 회 이후 매월 1회 발간)뿐만 아니라 각종 군경의문사의 진상규명과 군경양심수석방투쟁, 강제징집 철폐투쟁 등을 지원하는 등 군자주화, 민주화운동을 필요로 하는 대중들과 온 몸으로 하나가 되어 군자주화, 민주화운동의 일대 모범을 만든다.

예비역 대학생,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또 예비역들도 구경 만하고 있지는 않았다. 어제의 용사들이 나섰다. 길을 비켜라. 당시 예비역들은 도서관에서 고시준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86-87년 문무대. 전방입소 철폐투쟁을 교훈 삼아 90년부터 불기 시작한 자주적인 예비군훈련 쟁취투쟁과 그 해 10월 42주년 국군의 날을 주체적으로 맞이하고자 했다.

전국적인 예비역 복학생들의 군의 자주화, 민주화, 비핵군축을 위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성과로 91년 4월 연세대에서 「병영학교」가 최초로 열렸다. 이를 모범으로 경희대 수원캠퍼스, 조선대, 전북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예비역 복학생협의회(만우리)가 주축이 되어 군입대자들에 대한 군에 대한 올바른 소개와 병역법안내, 모범적인 병영생활 등을 제시하였다. 91년 2~3월 남현진 이병과 송종호 일병의 의문사사건을 계기로 전국대학생기자연합에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민주화를 위한 공동기자단」 구성을 통해 공동취재활동을 했다. ‘군대 죽으로 가는 곳입니까?’라는 기획광고와 ‘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공동취재기사가 연재되기 시작했다. 이는 인권현실과 함께 ‘청년과 병역문제’가 이제 청년학생 모두의 공동의 문제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했다.

당시 눈길을 끄는 것은 90년 7월 17일 군수사령부 탄약사령부 서준섭 일병이 양심선언을 했다. 그 내용은 국군조

8) 자료집 「군에 의한 민주화운동 탄압 실태」, 민가협, 윤석양후원사업회의 3개 단체 발행

직법폐기,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평화협정체결, 남북군사력의 10만 이하로의 감축, 가혹한 군사훈련과 사고로 사망한 모든 군정들에게 보상비 지급을 요구했다. 또 91년 8월 대구대 손석용 이병의 살신성인이 있었다. 그는 자기 학교 4층 옥상에서 분신투신자살을 하면서 ‘조국통일, 미국의 용병이 되어 동포의 가슴에 더 이상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라는 유서 남기면서 산화해 갔다. 이를 계기로 애국군인들의 군자주화, 민주화투쟁과 청년학생들의 비핵 평화군축 투쟁이 접목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험과 과도한 군사력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애국군인들의 절규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양심적인 군인들이 바로 비핵평화 군축운동의 한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비핵평화 군축운동은 군의 자주화, 민주화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윤석양 후원사업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원회로 새로 태어났다. 강경대 열사 사건당시 군경의 양심선언은 물밑 듯 터져 나왔다. 전·의경들인 박석진, 김대영 군인들인 이동익, 고대성 일병이 군대와 경찰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부대를 나와 오랫동안 쫓기는 몸이 되었다. 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회관에서 기나 긴 농성을 정리하며 그들은 군복대신 수의를 입어야 했다. 93년 7~9월경에 그들은 감옥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90년대를 여는 이지문 중위 사건과 군인들의 단결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한 젊은 장교의/ 양심선언 내용은 / 공개투표를 하였고/ 특정후보 찍기를 강요받았다는/ 그리고 개표 후 결과를/ 해당 부대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려 했다는.../ 같은 날짜 국방일보에는/ 외부에서 붙은 사주를 받아/ 근무지를 이탈한/ 젊은 장교의/ 탈영사고 기사가 / 실려 있었다

편해문의 시 ‘양심선언’의 일부이다. 92년 5월! 군인의 권리 찾기가 시작되었다.

92년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두고 군 부채자투표 부정을 폭로한 육군 제9사단 이지문 중위의 용기있는 양심선언을 시작으로 우리군의 역사상 최초로 광범위한 애국장교, 사병들이 스스로 주인으로 떨쳐 일어났다.

그것은 군 부채자투표 부정폭로로 나타나 사병과 장교들의 인격과 정치적 제 권리를 보장하라는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폐쇄된 군대의 서신검열과 소지품검사의 벽을 허물면서, 누구는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익명의 전화로, 생생한 병영일기로, 신문 제보로, 면회장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군 부채자투표 부정폭로를 펼쳐내는 등 대중운동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며 90년대 군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그것은 9사단뿐만 아니라 1사단, 5사단, 7사단, 12사단, 26사단, 30사단, 52사단, 57사단, 60사단, 수도방위사령부, 2군사령부 수송연대, 3군사령부 예하부대, 육군통신사령부, 육군기술병과학교, 공군3579부대, 해병2사단 등 육·해·공군 전군에서 거대한 물줄기로 흘렀다. 애국군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지키고자 선거부정과 무법행위가 횡행하는 ‘병영’에서 그들의 요구를 부르짖으며 민족군대, 국민의 군대를 향해 자기 몫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관급, 장성급 예비역 장교들이 군 부채자투표 선거개입을 몸으로 실천한 국군기무사에 대해 그 기능과 임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글인 「누가 군을 욕되게 하는가」 등을 한겨레신문⁹⁾에 투고하는가 하면 이 중위의 용기 있는 행동에 “떴떴한 일 했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은 상급장교 등 중 하층 장교, 사병들과 많은 군인 가족, 제대사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렇듯 군민주화를 바라는 뜨거운 동참이 거대한 파도가 된 적은 해방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을 무색케한 일부 정치군인들의 기무사를 동원한 치밀한 정치개입과 과잉충성은 민·군 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바라는 4천만 민중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공군방공포병사령부와 육군기술병과학교의 여당홍보 정신교육과 교육교재,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기상천외한 전화를 이용한 대리투표, 군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입증하는 육군 3군사령부의 ‘건강한 부대관리’라는 제목으로 포장된

9) 한겨레 신문, 92. 4. 5일자 참조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선거지침문서가 공개¹⁰⁾되고, 일선부대에서의 기무사요원이 부재자투표용지를 일괄수거¹¹⁾해 기무대에서 바꿔치기 했다.

장교, 사병들의 목숨과도 같이 귀중한 자주적인 주권의 한 표를 무참히 짓밟개면서 그들 스스로의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더욱이 이지문 중위를 이등병으로 강등, 파면시켜 군복을 벗기고(나중에 기나 긴 재판을 통해 명예 회복, 현 서울시 광역 의원), 이원섭 일병을 기소유예 처분한 국방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는 높아만 갔다.

광주 학살로 민·군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9 사단장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바로 그 9사단 출신 이지문 중위가 군의 생명인 명령과 기강의 상징인 자랑스러운 중위계급장 대신 이등병모자를 쓴 채 “자기 자신이 양심선언으로 군복을 벗는 마지막 군인이기를”바라며 국민을 향해 물었다.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장군과 군의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는 양심적인 청년장교와 사병, 이들 중 누가 진정 애국자이며 국가와 군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지문 중위의 물음에 대해 처음으로 군·민 관계가 아닌 민·군 관계라는 말을 자리잡게 한 예비역 준장 표명열(전 육군 정훈감)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표명열 예비역 준장, 「누가 군을 욕되게 하는가」

표 준장은 92년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누가 군을 욕되게 하는가」라는 글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중위의 양심선언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군대란 본디 정직을 생명으로 한다. 정직하지 못한 군인은 이미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것이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병영생활이라는 특수한 여건에 눌러 굴종적 타협과 좌절과 패배의 경험을 가진 병사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적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휘말려 우리 군이 상처받고 불신 받는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차제에 반드시 강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는 바램도 남겼다.

그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기무사의 역할을 엄하게 꾸짖었다.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무사의 역할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군을 진정으로 강한 민주군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또 국가 안보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기무사가 전문화를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정진하기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권력지향적인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의 기무사에 대한 비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문명한 어떤 나라의 군대를 보더라도 우리 군의 기무사처럼 지휘권 중심의 군 조직 기본원리마저 무시한 채 무소불능의 절대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연대급에 지원 나와 있는 기무사 간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연대장실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 자기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연대장의 근무태도, 동정 및 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연대장의 확인이나 진술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대로 자기사령부에 보고한다.”

기무사의 정지지향적인 역할이 결국 일선 간부들의 군 생활을 감시일변도라 지적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그 연대장의 승진·진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다. 얼마든지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간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저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때 전체 육군의 정훈교육을 책임진 표 정훈감의 따끔한 충고는 이렇게 맺는다.

“나의 군 생활 중에 기무사 요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떤 공식적 발언이나 문서도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 항상 옳고 완전 무결한 조직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빗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10) 위 신문, 92. 4. 24일자 참조

11) 위 신문, 92. 5. 5일자 참조

군을 바로 세우려는 역사는 도도히 흐르며 반복되는가.

13년 전 88년 7월, 육사(32기)출신 임택준 중령이 대통령에게 군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31개항의 고발문을 내며 양심선언 한 뒤 한번 강산이 변해 '제 2의 임택준'인 손대희 중령의 양심선언이 터졌다. 전방의 현역 대대장인 손 중령이 97년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두고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양심선언이 그것이다. 그는 이 양심선언으로 보직해임 돼 군법회의에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치관여금지위반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98년 10월1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99년 2월 호에 실린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병역기피의혹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중령이 10년 전 군 인권의 무법자들을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면 그는 병역을 기피하는 특권층에게 비판을 가했다. 그를 양심선언 하도록 마음을 울린 것은 한 사병과의 면담 중에 "누구는 돈도 없고 뺨도 없어 이 추운 곳에서 고생하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 소록도에서 노래방이나 다니며 편하게 군 생활을 한다"는 말이었다. 감옥을 나온 그를 괴롭힌 것은 평생 군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손 중령을 조선일보가 시국선언을 '이적행위'라며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다.

임 중령의 육사 출신 군 생활 17년, 손 중령의 ROTC 19기 출신 군 생활 18년은 비록 타의에 의해서 마감되었지만 많은 후배 장교들과 함께 양심선언 출신 고급장교로서 군민주화를 향한 기나긴 여정은 희망을 앞두고 있다.

표 명열 준장의 따끔한 충고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에게도 이어진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재가 표 준장을 비롯한 예비역 장군들에게 편지를 보내자 표 준장은 한겨레신문 2000년 1월 11일자에 기고한 '이회창 총재에게'라는 글에서 "그렇다면 혹시 이 총재께서는 과거 독재정부가 정권 안보를 위해 고문을 통해 조작한 간첩사건들, 억울한 의문사를 만들었던 많은 일들이 애국적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다는 향수를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닌지?...안보 역량 강화의 기초는 무엇보다 '살맛 나는 세상'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 '지도층 자제들이 앞장서서 군 문에 입대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손 중령의 선배(?)답게 이 총재에게 따끔하게 답장했다.

하늘같은 예비역준장의 따끔한 충고에 많은 예비역병장들이 독자투고를 통해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여준 것은 정치권의 외풍에서 군대를 바로 세우려는 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같은 신문 1월 26일자에서 최영환 씨는 표 준장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나는 예비역준장이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다만 우리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겐 너무 멀게 느껴졌다..친히 그렇게 딱 부러지는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다. 이 총재는 이제 함부로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좋은 글을 쓴 표명렬 예비역 준장께 고맙다는, 멋지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차분히 군대를 바로 세우려는 희망 섞인 대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유는 양심의 목소리는 인간의 소리이자 하늘의 소리가기 때문이다.

10년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91년 「애국군인」 사건의 권대현

20세기의 무덤에 갇힌 자, 권대현을 아는가?

필자는 '송창식 노래를 좋아하던 털털한 청년' 애국군인 32살의 권대현을 소개할까 한다. 91년 「애국군인」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당시 「애국군인」 사건으로 국군 기무사령부와 군 교도소 생활 후 정신분열증에 갇혀 지금껏 10년째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영문학과 88학번이었던 권대현, 대학 2학년 때 53사단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동아리 선배인 서계호(33)씨 등 9명과 함께 '애국군인' 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91년 3월 21일 긴급 체포되었다. 이후 국군기무사에서 20여 일간의 조사를 받은 후 소위 '남한산성' 이라 일컬어지는 군 교도소에서 9개월을 복역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 출소 뒤 권 씨의 모습과 생활은 정상과도에서 멀찌감치 비껴나 있었다. 영창에서 길들여진 기상, 취침시간에 맞춰, 방 안의 모든 물건은 군대식의 '각' 을 잡아 정리했다. 간단한 대화의 경우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곧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로 빠져들었다. 10년 가까이 여전

히 갇힌 수인처럼 살고 있다.

또 사라지는 개구리 군복

93년 11월~94년 군 구속자만해도 평화실현 학생연맹사건의 신평식 씨를 비롯한 3명을 포함해 15명이었고 95년에 52명, 96년에 54명, 97년에 47명으로 이때까지 모두 168명의 군인들이 구속되었다. 기무부대는 양심적인 군인들 164명을 군 교도소로 보내는 일에 술선수범할 게 아니라 168명의 특권층의 군기피자를 군에 보내는 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1996~7년도는 ‘민족해방군 조작 사건’ 탄압을 중심으로 벌어진 100명이 넘는 양심적인 군인들에 대대적인 탄압의 해였다. 96년 가을의 북한 잠수정 출현의 여파로 사회와 군대전체를 바짝 얼어붙게 한 뒤 양심적인 군인들을 탄압하였다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는 1948년 여순항쟁 뒤 일어난 다음 해인 49년부터 한국전쟁직전까지 진행된 양심적인 군인들에 대한 대규모 숙군작업 이후 최대의 탄압사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1992년 이지문 중위 사건으로 폭발된 일반 사병들의 대중적인 군부재자 부정투표 폭로이후 96년의 연세대사건 진압과 함께 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탄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은 물론 강원, 대전, 전주, 부산, 진주 심지어 제주까지 온 나라 곳곳에서 학생운동 출신 양심적인 군인들은 면회 길에서, 또는 내무반에서 잠자다 말고 영문도 모른 채 기무부대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양심을 저당 잡힌 기무부대는 그래서 반공, 반북의 보루인 군대 안에서는 절대로 양심적인 민족군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잡듯 잡았던 것이었다. 이는 거꾸로 그만큼 군의 자주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군대 울타리 안에서 양초처럼 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사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학생운동의 전력자들이 군 입대를 하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시위 전력자는 곧 좌익이고 그것은 또한 군 내부와 적이라는 논리는 군대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국방부와 기무부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에 한치의 헛점이 없기를 바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기무사는 양심적인 군인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못살게 하기 위해 ‘로보캄’까지 갖췄다. 1999년 12월2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서 기무부대 소속 군 사법 경찰관의 수사 관할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법은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던 기무부대의 수사관할권을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로까지 확대한 것이어서 모든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급기야 2000년 1월 3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은 ‘기무사 수사권 확대에 대한 논평’에서 “오늘날 남북교류협력법과 집시법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권을 확대한 것은 집회·시위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되는 권리를 누리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질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발끈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엔지오’란 책에 쓴 적이 있다. 지금 한반도 사람들이 손과 발로 뛰고 싸우며, 머리와 가슴으로 함께 꾸어 온 그 꿈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관계의 정상화이다.

바로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끝나는 문제는 한국 사병들에게는 사실이 걸린 문제이다. ‘한국군이 모든 구성원과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희망의 군대로 바로 설 것이냐 아니면 분단과 권위주의적인 군대모습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필자는 ‘우리군대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라 확신한다.

군의 변화가 제일 눈부시다. 바로 한국군이 비로소 미국한테서 벗어나 군의 주인이 된다. 국민의 군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군이다. 그야말로 '함께 낡은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사람냄새가 나는 군대, 토론이 있는 군대, 인터넷접속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1인당 한 대씩 있는 군대. 압록강 아니 만주벌판에서 보초와 불침번서는 군대. 155마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인민군과 한국군이 말타기하고 강강수월래하는 군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리가 본 희망의 한국군대는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질적 첫 조치로 이름뿐인 유엔 사령부는 해체되고 미국한테서 전시 작전지휘권까지 실질적으로 되찾게 된다. 주한미군 철거를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진다. 남북간의 불가침조약이 발효되고 남북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으로 해체되고 한국군은 미국의 동북아사령부 개편계획의 역할분담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등의 한미군사동맹은 개폐되고 한국과 미국간에 서로 대등하게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조약이 만들어진다.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해체되고 서로 대등한 군사교류회의체만 가동된다. 한반도 내에서 '핵에 관한 법령'을 정해 외국군대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반입, 운반, 조립, 축적, 생산에 대해서 강력히 통제를 한다. 이제 한반도는 핵무기 실험장이나 연습장으로 혹은 핵무기 대리전쟁터로 사용하지 못한다. 남한과 북한이 지역별 비핵지대화선언을 한다. 강대국들의 핵은 먼저 폐기되고 특히 일본의 비핵화지대화를 요구한다.

둘째, 한국군의 주적 개념은 '동족'인 북한이 아니라 '외적'인 제 3의 적으로 바뀌어 남북한이 공동으로 안보를 지킨다. 통일군대로 바뀐다. 미·일·한 세 나라, 한·미 두 나라의 합동군사훈련은 중지된다.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불법적인 정찰은 중지된다. 휴전선주위의 대인지뢰, 대전차지뢰는 모두 없어진다. 미국군사학교에 한국군의 장교파견은 중지한다. 한국 국방부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은 사라진다. 노근리, 매항리, 제주 4·3학살 등의 박물관이 생겨 하루에 1만 여명이 견학한다. 휴전선과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문제에 대해 미군과 한국 국방당국이 전면조사한 뒤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죄, 배상한다.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진 희망의 군대 분위기에 맞춰 남북한 군인들의 체육교류가 시작된다. 남북연합군대구성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고 공동군사훈련도 머지 않았다. 그 뒤 남북군인이 압록강에서 함께 보초를 서게 된다. 남북한의 연방군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합동 군사퍼레이드를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일년에 두 차례 연다.

셋째, 전시 접수국 지원협정(WHNS), 한미행정협정(SOFA)등 한미 사이의 각종 군사, 행정조약은 철폐되어 필요 없게된다. 주한미군은 철수를 시작하고 그 동안 주한미군에 대한 총 지원비용 수 십 조원을 차츰 차츰 한국에게 돌려준다. 미군기지의 한국인 노무자는 한국정부가 주선한 직장으로 돌아간다. 관세 및 과세 특례된 세금은 미국에 소급 징수한다. 미군이 그 동안 불법 점거한 8천만 평 이상의 미군 공여지를 전면공개하고 돌려 받는다.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를 비롯한 군산 등의 미군기지 철수와 함께 그 지역은 주민들에게 돌려지고 평화적으로 사용되며 최대의 오염지역인 미군주둔기지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데 미군이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기지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미국이 즉각 실시한다. 과거의 11만 건의 주한미군범죄는 전면 재조사되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미국이 배상을 하게 된다.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한다. 주한미군범죄는 영원히 사라진다. 당국의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이 발표되고 기지촌을 특별지역으로 선포해 건전하게 개발한다. 한국이 군사협상과정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에 임하게 된다.

한·일 군사협력은 중지된다. '한국 국방부'의 이름으로 일본의 성적노에 '군대위안부'의 진상규명, 사죄, 배상을 일본 방위청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각 부대 '정신교육관'에 일본의 성적노에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정을 걸어놓고 다시는 외세군대에 '민족의 자궁'인 여성들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새긴다. 전범국 일본 국왕의 방한은 있을 수 없고 일본의 완전한 과거청산이 있는 뒤 다시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본다. 전범국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은 저지된다. 일본에 끌려간 징병, 징용, 근로 정신대, B·C 급 전범, 문화재(금괴를 비롯한), 재일교포 지위

문제도 해결된다. 남북한이 유엔을 미국주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자리잡도록 돕는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외교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독도에 일본의 순시선이 얼씬거리지도 못한다.

넷째, 획기적인 군축과 함께 국방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어 무기도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쓸데없는 도입은 줄어들고, 미국무기 구매강요는 사라져 해외무기구입이 줄어든다. 과거의 무기구입과정은 ‘무기청문회’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진상규명된다. 미국도 다른 나라와 함께 동등하게 무기구매과정에 참여한다. 무기거래상은 많은 부분 공개되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무기구입과정의 부정커미션, 리베이트는 없어진다. 미국에 지불한 무기기술도입시의 로열티를 전면 공개한다. 미군방위분담금, 주둔부담금을 비롯 각종 무상지원내역을 공개한다. 미국 항공모함의 한국입항은 거부된다. 미군이 지난 시기 불법적으로 들여온 PX물품 품목을 공개한다. 과거 미군 골프장의 본국 송금액을 공개한다. 부패‘특권’신분증 미군속 신분증은 즉각 폐기한다.

미국반성의 날을 정해 미국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참회하는 날로 한다. 한국전쟁 때, 그리고 정전체제하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크고 작은 군사충돌과정에서 생긴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제와 합토제를 판문점에서 지낸다.

홍치산 시인은 희망의 그날을 「통일 그날」이란 시에서 노래하고 있다. (홍치산, ‘『10분사랑』, 두리.96. 2. 25)

전 세계 기자들 후레쉬 터져 / 휴전선이 무너지고 지뢰가 뿔뿔히었다./ 비무장지대엔 미군 훈련포탄 대신 축포가 오르고/ 대남 대북 비방 소리 통에 통일 행진곡 / 조선은 하나다. 심장이 뛰고/ 소리치며 아우성 치며 달려와 안기는/ 동포의 뜨거운 포옹이 가슴 터지게 껴안을 때/ 서서히 현실임을 알았다./ 형제부모를 만난 이산가족 / 아직도 믿기지 못한 사람들/ 자기 살을 꼬집고 나서야 환호성을 질렀다./ 세포 구석구석 환희로 기절할 것 같고 / 씩씩이도 푸져 누구든 집에 있는 술과 음식 / 마구 내놓았다. 노동자 학생 농민 / 남과 북의 풍물패들 수 만 명이 축포소리에 맞춰 밤을 새워 / 일렁이고, 풍물치다 지치면 팔도 아리랑을 불렀다. / 수경이 누이가 단상에 올라가 인사를 하고 / 그간의 모오든 수난도 다 씻어버리고 오로지 / 기쁨으로 터질 듯한 눈물

놀다 지치면 하나 둘 이름도 몰랐던 동포들 / 서로 자기 집에 가자고/ 이남 노동자 농민 이북 노동자 집에 가보기도 하고 / 공장에도 가보고 농촌에도 가보고/ 이북 노동자 현대 조선소에도 가보고 / 이북엔 이게 좋구나 / 이남엔 이런 것이 좋은 거구나 / 우리 노동자가 힘을 합치면 / 우리 농민이 힘을 합치면 / 농산물 외국에 의존 안해도 된다 / 전세계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다고 / 떠오르는 동해 해돋이 여명을 보며 무쇠 팔뚝 굳게 껴안았다.

한국군대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하여

민족의 군대의 군민주화 내용은 더욱 보기 좋다.

군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군의 민주화」의 내용은 군이 극소수 정치 지향적인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비민주적인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병사들과 초급장교들의 민족 의식,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인격적, 정치적 권리를 찾는 의식을 형성하는 자발적인 토론이 시작된다. 특히 군을 구성하고 있는 사병, 하사관 양심적인 직업군인, 군무원들은 물론 그 가족, 애인, 제대군인들이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첫째, 군의 정치적 중립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한때 외세와 손잡고 군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았던 극소수 군부세력들은 나치에 부역한 자들의 과거 청산처럼 영원히 단죄되고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무기 도입비리, 국방예산 낭비, 병역비리와 양민학살, 군 의문사 등은 전면적으로 밝혀진다.

군대내 성폭력 행위자는 구속하고, 성폭력 백서에 실리며 군대내 성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

자들의 권리는 인정되고 집총거부, 군사훈련거부 등 양심의 권리는 보장된다. 정치적, 종교적,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한 탄압에 대해 군당국의 속죄와 배상이 이루어진다.

각종 비리 백서가 발간되어 진중문고에 비치한다. 군수물자도입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해 공사입찰, 군납품에서 각종비리는 사라진다. 납대문시장에 군화, 대검, 수통, 총기류등 군수보급품이 돌아다니지 않게 된다. 부패무능한 군지휘관에 수여된 상훈을 되찾는다. 그 뒤 중립적인 군부와 정당, 주민, 사회단체 대표로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군의 정치군인화를 막고, 사병을 개인적으로 부려먹는 私兵化현상을 막고 권위주의체제를 벗어버리기 위함이다. 군의 헬기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사회조직으로서의 군은 봉건적 잔재를 없애기 위해 닫힌 문을 열고 예산, 조직, 운영에 있어서 세세한 내용까지 공개의 원칙을 지킨다. 군의 큰 폭의 행정정보공개만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는 길이므로 군사기밀은 대폭 줄인다. 장관, 군사령관, 군단장을 비롯해 사단장, 연대장급 이상 군지휘관의 판공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비대화한 고급장교를 대폭 줄이고 인사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세워, 예산의 낭비와 정실인사를 배제한다. 학연, 지연, 혈연을 타파한 공정인사가 실현된다. 상훈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중복되어 비대해진 부처산하기관인 홍보, 연구, 체육, 복지, 연금시설 등은 통폐합한다. 군 골프장은 제대군인들의 심신 단련장으로 하고 평화도서관 부지로도 확보된다. 전쟁기념관은 평화기념관으로 탈바꿈한다. 희망의 한국군대는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된다. 전시동원체제는 외세의 침입 때만 운영된다.

둘째, 국군기무사는 구조조정되며 군 수사기관도 군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구조조정에 참여한다. 이제 군대 안의 모든 사고는 객관적인 조사기관에 의해 진상조사가 시작된다. 해방이후 군 의문사 당한 병사들과 각종 군폭력,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 사망, 부상한 병사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있게 된다. 그들은 국립묘지에 묻힌다. 동시에 80년 강제징집부터 모든 군의문사, 군폭력 사고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재발방지법이 만들어진다. 희생자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합동 위령제를 실시한다.

이제 '재향군인회, 성우회등 퇴역군인 단체들이 지난 50년 동안 이데올로기는 걱정해도 군의문사를 비롯한 후배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제기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기무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심적인 군인들의 복무에 대한 탄압과 정치적인 감시, 양심적인 군인들의 사찰카드를 소각하고 사찰활동의 책임자는 처벌된다. 현재구속, 수배중인 양심적인 군인·전경들은 석방, 수배 해제되고 각 사단 영창과 군기 교육대는 없어져 사병인권상당실로 바뀐다. 80~90년대 양심선언 군인 전경, 양심적인 군 구속자 등 부당하게 불명예제대한 군인들은 명예가 회복된다. 군 교도소는 폐쇄성에서 벗어나고 소내 인권유린의 책임자는 소급 처벌되어 군의 장교, 사병인권현장이 발표된다. 또한 사병들에 대한 극우적 반공반북이념의 「정신교육」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고취할 평화, 통일교육으로 바뀐다. 우편물, 도서, 면회, 소지품 등에 대한 검열은 없어진다. 전자위문편지가 생긴다. 방위산업체의 노동자 탄압은 사라지고 방위산업체는 평화산업으로 전환된다.

셋째, 현역병의 과도한 복무기간을 3군이 균등하게 일차적으로 12개월로 준다. 이어 병력감축, 무력감축과 동반하여 방위비는 일차적으로 절반으로 줄여 국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대폭 줄인다. 나아가서는 중국적으로 징집제도를 철폐하고 지원병제도, 완전한 직업 군인제를 실시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예비군과 민방위제도는 점차 폐지시켜나가고 위법적인 준군사조직 전투경찰대는 해체한다. 지원병제도 실시로 그 동안 변형된 병역의무인 카투사,의경,경비교도대,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은 없어진다. 병영 안의 각종 전투부대에서는 대민 시위진압훈련이라는 충정훈련을 중지한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군화를 신은 채로 뜬눈으로 비상대기하는 일은 없어진다. 내무반은 더 이상 '수용'시설이 아니라 사병들이 개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 신병 교육대와 내무반에서 일제 잔재인 '점호'는 사라진다.

또한 군입대자들을 둘러싼 각종 병무행정의 청탁과 부정비리는 철저히 밝혀지고 부정하게 병역의무를 피한 자는 다시 군에 보내진다. 병무청은 '병역지원청'으로 바뀐다. 신병 자대배치는 스스로 보직을 정하며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군의 낭비예산을 막아 생긴 자금으로 징병제당시의 군제대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넷째, 군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병들과 하사관, 초급장교들의 처우개선 및 인격적, 정치적 권리들을 신장시키며 구타와 가혹행위가 없는 병영생활의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사병들의 근무시간이외 개인 사생활은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서 직무이외의, 혹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군대매체는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남북한간에 사병들의 교류가 있게 된다. 군대 안에서 반민족적인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은 구독이 금지된다. 군의 현실을 왜곡하고 회화화하는 모든 군 프로그램은 중지되고 동족에 대해 반복의식을 고취하는 '쉬리'의 상영도 중지한다. 군사평론은 자유로워 성역은 없어진다. 부대시설과 운동장은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더 이상 군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 대민 피해는 없어진다. 1년에 한 달 이상 의무적으로 대민활동을 나가 민·군 협조를 도모한다. 육사 등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제도를 비롯 양심적인 민족간부를 기르는 도장으로 자리 잡는다. '쿠데타박물관'을 세워 한때 군 지휘관들이 국가방위를 소홀히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산 탱크와 총구를 민중에게 들이대 정권을 찬탈한 치욕의 역사의 현장으로 교육한다.

다섯째, 군대 안에서 내부에서 군민주화를 저해하는 군사법원법 (옛 군법회의법)을 비롯한 각종 군 관계법은 개정되어 사병들의 권리를 앞장서 보호하는 법과 기관으로 바뀐다. 유신 직후 제정된 「군사기밀 보호법」, 5공 당시 국보위 등에서 만들어진 「국방보도규정」 등은 폐지되고, 민간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모든 군 관련자료들은 시급히 공개되어 군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다시 쓰여진다. 또한 사병들은 군사운영과 식단작성에도 적극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며 일부 하사관, 직업군인 등도 '주식투자'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방'에 몰두하게 된다.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와 군인연금, 보험에서 노후안정을 보장한다. 직업군인들이 이삿짐을 싣 채 낡은 군인아파트를 전전공공하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군대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이 미국과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인노릇을 하며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통일지향적인 희망의 군대로 행군하는 데는 양심적인 장, 사병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사회에서는 군인들의 인권 및 민주화, 자주화에 대한 상시적 지원, 대책기구 결성이 요구된다. 군대를 바로 세우는 구체적인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주변의 처지에서 군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종교, 노동, 단체 등에서 평화/병영 아카데미를 통해 군사정세, 군의 역사, 군의 현주소, 국방예산 평가, 군산복합체의 실체, 주한미군, 평화교육, 군인의 인권, 여성과 평화와 군대, 병역의 의무문제, 군축 - 무기를 보습으로, 평화와 통일, 기지활동가 강연, 양심적인 군인, 군사평론가 등 군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의 강연, 토론회, 만민공동회, 분쟁지역 평화기행, 집회와 서명 등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군 관련단체로 군인의 전화, 군인권상담소, 평화를 위한 군인회,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 통일사회를 위한 군인연대, 민주군대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군인들의 모임, 군인들을 위한 민주인터넷 방송국, 군에 자식들을 보낸 어머니들의 모임, 군에 사랑하는 애인들을 보낸 여성들의 모임 평화통일 군사평론가협회, 민족방위를 생각하는 군원로들의 모임, 군산복합체를 걱정하는 군인들 등의 모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군사' 인터넷사이트 개설로 네티즌을 만나가며 여론을 만들어 나가며 개미처럼 일할 때 그 기초는 더욱 튼튼해진다,

시 「통일 그날」은 희망의 그 날을 노래하며 계속 이어진다

아! 그날 / 김현회는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으며 / 자유총연맹 사람들, 안기부 사람들 가슴에 환희가 오를 수 있을까! / 아니 꼭 그들이 아니라도 / 민족 지상과제 통일성전에서 안락을 찾아 / 낙오된 수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을까. / 통일을 반대한다던 모오든 사람들 / 이처럼 춤추고 기쁨에 눈물이 심장에 흐를 수 있을까! / 다들 기뻐서 놀

때 / 쭈그려 앉아 멀뚱멀뚱 구경이나 할까!

그런 친구들 손을 잡아다 신나게 풍물판 가득 놀아보리라 / 통일을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미제가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세금, 국방비의 무게에 짓눌려 피곤에 지친 지하철 승객들의 눈동자에도 비로서 생기가 돌고 빛이 나기 시작한다.

희망의 군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비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부패 군인 뿐이야/ 낡은 권위주의 뿐이야/ 육군개혁은 인정 못 해/ 더는 못 참아/ 누가 누굴 군기 잡는 거야/ 의식화라고 마음대로 떠들어/ 이젠 바꿀 거야/ 사병들의 심판 뿐이야/ 바뀌 바뀌 군대를 다 바꿔...

유행하는 노래가사와 함께 지구반대편 스페인에서 95년 12월 현재까지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한 청년학생들이 30만명이나 되었다는 된다는 소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2005년 시원한 가을 어느 날, 물가의 독수리 떼나 까마귀 떼가 완전히 몰려갔고 남북의 멧돼지와 사자가 친구가 되어 남북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한민족을 지키는 코리아연방 군인으로 태어났다. ■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

이대훈 (영국브래드포드대학 평화학, d.lee1@bradford.ac.uk)

“내가 (평화주의자들로부터) 자주 듣던 말 중에 하나는 ‘당신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는 전쟁때 뭐했어 라고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곧 가족을 꾸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처럼 병역거부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다. 어떻게 이런 먹구름을 머리에 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가족에 나를 사회의 이단자로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러던 중 어느 날 대학 다니던 우리 아들놈이 씩 웃으며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 아버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던 걸 알고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대단한 영웅 보듯이 말이에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참 엄청난 충격이었다. 물론 나는 내가 영웅이라고는 비슷하게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아마 시대가 변한 것이겠다. 이제 대학 게시판에는 ‘당신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아빠, 전쟁때 뭐했죠?’라는 글귀가 적히기 시작했다...” (토니 랜들스)

“우리는 정말 광야의 외로운 외침 같았다. 정말 그 당시 우리는 그렇게 느꼈다 -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소수 집단. 그 당시 분위기는 대단한 압박이었다. (양심적인 병역거부의 대가로) 우리는 동료들과 서로 10여년간 만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작용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특성과 그 시대, 그리고 그 환경의 어려움이 합쳐져서 그런 의식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정말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었다...” (오드리 굿프랜드)

“얼마전 나는 공군에서 막 제대한 조카와 추수감사절 식사를 함께 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나에게 물었다. ‘왜 평화주의자가 특별히 더 부각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 아닌가? 그리고 모두 각자 자기 갈 길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자네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F-104 전폭기 조종석에 앉아서 폭격에 몸을 드러낸 도시로 향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고도 기독교인이라 믿는다면 나는 기독교인임을 포기하겠네.’ 조카는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알 존스)

(이상은 모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양심적인 병역거부자의 증언, 출처: 뉴욕 반전연맹 위임, 물결을 거슬러: 2차 세계대전 당시 평화주의자들의 저항 수기 모음 Against the Tide: Pacifist Resistance in the Second World War - An Oral History)

“19세기의 (유럽)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징집제가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나폴레옹이 시작한 이래로 프랑스와 독일은 150년 동안 징집제를 시행했는데 둘 다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패망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거기에 한가지 이유는 평화적 시기에 청년층 한 세대 전체를 전쟁을 위해 훈련시킨 데 있다. 그렇게 해서 한 세대 청년층들이 전쟁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

하도록 만들고 또 정치인들도 힘의 정치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고무시켰던 것이다...” (케슬린 론스데일, 화학자, 1945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 “Conscription in the H-Bomb Age”에서)

1. 상식적 출발: 사람의 양심에 따른 결정은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소수 특별한 신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공공 토론의 장에서 말조차 꺼내기 힘든 주제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은 인권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이 전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며 이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¹²⁾으로 그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논의하기 힘든 것은 인권이 설정하고자 하는 영역,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개인의 불가침적 자유 영역이 여전히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 아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종교가 살상의 금지를 기본 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 신앙인만이 지금까지 행동으로서 ‘집중 거부’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종교의 자유라는 영역 역시 국가권력 또는 국가주의 그리고 사회문화적 전통¹³⁾ 아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 불안한 영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일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는 무기의 사용과 훈련을 거부하는 집중 거부자부터 군사적 훈련과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까지 존재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전은 참여해야 한다는 전쟁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16세기 유럽에서 기독교 메노교파가 시작해서 17세기 영국 우애회 교파, 18세기 독일의 형제교회 교파와 러시아 두코보르 교파로 확산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 상당기간 동안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흐름을 지속, 확산시켜왔다. 1, 2차 세계대전 때에 웨이커 교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징집거부 참전거부를 하면서 병역거부운동은 병역거부자의 인권존중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에 부각시켰다.

주로 종교적 배경의 이러한 흐름은 핵전쟁을 전제로 한 냉전체제에 들어오면서 핵무기에 대한 자각과 베트남전과 같은 강대국의 횡포에 대한 자각과 결부되어,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병역거부의 흐름으로 확대된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력과 전쟁 일반과 관련된 절대적 거부와 핵무기나 특정 전쟁과 관련된 선택적 거부로 나뉘기도 한다. 아울러 세속적으로 확대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필연적으로 국제인권기구의 논의에 영향을 미쳐 냉전 종식 이후 구체적인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 인종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국제앰네스티¹⁴⁾, 1991년). 이는 무기를 들기를 거부하는 집중 거부와는 질적으

12)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협약 9조.

13) 여기서 사회문화적 전통 내지 폭력은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남성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 토론의 주제가 아니므로 상세한 논의는 하지 못한다.

14)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위 정의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구금 또는 투옥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구금 또는 투옥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수로 간주하는 데에는 구금 및 투옥의 이유가 아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1991년 자료 기준) (1)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와 그런 사람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 (2) 병역 거부 신청자가 신청권을 거부당했을 경우 (3)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위 국제앰네스티의 정의대로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4) 징집이 된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자 했을 때 거부되는 경우 (5) 병역기간 중 새롭게 판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기로 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을 경우 (6) 순전히 민간통제하여 순전히 민간적 성격의

로 다른 규정으로서 살상을 전제로 하는 무력의 사용과 전쟁, 그리고 군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개인의 양심과 윤리에 따른 판단과 연관을 갖고있다.

2. 유엔에서의 인권 규정

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 1950년 확정된 국제법의 뉴렌베르그 원리 중 제4원리 (“자국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다른 행동이라도 행위자가 도덕적 선택권을 가졌을 경우 국제법상 제기되는 의무를 방기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와 제6원리 (“아래 범죄는 국제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a-1.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 국제 조약, 협약, 보장에 위반한 전쟁 또는 침략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전개 행위...)

- 그 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의 불차별조항, 고문금지 조항, 공정한 재판 및 처벌 조항, 임의구금 금지조항, 난민신청자 보호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나.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심의 및 결의

-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7호로 유엔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검토하도록 위임 결정.

-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87년 46호: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 결의.

- 유엔 인권위는 1989년 결의안 59호에서 위 사항을 재확인하면서 각국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령을 수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도록 촉구함. 아울러 “강제 징집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제도가 미비한 경우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로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체 복무를 제공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투옥하는 일을 자제할 것”을 권고함. 동 결의안은 또한 “대체 복무는 원칙상 비전투적 성격의 민간 업무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유럽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유럽위원회 장관회의 결의안으로 1987년 대체복무제의 실시를 지지하고 199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유엔 인권위 결의안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1993년 시민적 정치적 인권을 다루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별칭 자유권 규약 또는 인권 B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조항과 관련 일반 의견¹⁵⁾ 22호를 채택.

일반 의견 22호의 주요 내용: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7) 대체근무 기간이 병역거부에 대한 징계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15) 일반의견(General Comment)은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국가보고서 이외에 필요에 따라 규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발표하는 제도이다. 규약의 각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제적인 기준의 하나이다.

본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이사회는 이 권리가 치명적인 무력 (lethal force)을 사용할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 및 기타 신념을 구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한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본 규약 18조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간주한다. 이 권리가 법과 관행으로 보장된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특정 신념의 성격에 따라 차별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 본 이사회는 조약 가입국들이 각국에서 본 규약 18조에 의거해서 병역을 면제받을 경우 어떤 조건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대체 복무의 기간과 성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 1995년 3월 8일 유엔인권위에서 결의안 83호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에 관한 인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권임을 재확인.

- 1998년 4월 22일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결의한 77호 채택.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결정사항. 유엔 회원국은 이를 사회에 알리고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

- * 1995년 유엔인권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양심에 기초한 이성적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 *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 *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관심을 촉구하며,
-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 *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해 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취하도록 권장하며,
- *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 *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이 각국 정부, 유엔 전문 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조직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하며,
- * 차기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의제를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998년 4월 22일)

<위 결의안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주요 권리>

- *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 *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 * 비보복적 성격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
- * 복무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수 있는 권리

- 2000년 4월 20일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짧은 결의안 34호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함.

*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98년 77호를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관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정부간 및 비정부)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이행 및 침해 상황에 대한 국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령이 없다고만 간략히 보고됨.)

-->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법령과 관행을 검토했는지의 여부,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한 또는 미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 유엔인권이사회(시민권규약에 기초한 전문가기구)에서 나라별 인권 권고안 또는 심의사항에 여러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침해사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다. 유엔 인권절차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 유엔 인권절차는 회원국 정부에 강제력을 갖지 않으므로, 정부에 대한 압력과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보통 인권기관의 특별보고관 또는 실무그룹의 보고서, 인권기구에서 회원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 인권기구에서 민간단체가 하는 보고서 제출과 발언, 인권이사회의 자유권 상황 심의결과의 발표, 정부의 유엔 결의사항 및 조약상의 의무 이행 감시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력과 사회적 홍보효과가 생긴다.

- 이런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인권기구는 유엔인권이사회(자유권규약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가장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인권기구)이다.

라. 유엔 인권절차의 활용 방법

유엔 인권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은 현재 평화인권연대에서 번역 발간 예정으로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엔 인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실무적 지침자료에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자료에는 간략히 언급한다.

(1) 유엔 인권위 관련

- 국제인권단체의 구두 및 서면 발언에 내용 포함.
- 상황 정보 제공(고문에 관한 특별 보고관, 임의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 보고관, 탈사법적 처벌에 관한 특별 보고관)
- 한국의 지속적인 인권 거부, 법령 미정비, 가혹한 처벌, 구타를 포함한 고문 실태가 지적되도록 활동

(2) 인권이사회

- 한국 정부의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응
- 인권단체의 반박 보고서에 내용 포함
- 이사회의 권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이 포함되도록 목표

(3) 인권이사회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별 제소(개인통보제도)

-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시도한 이후 제소(제소 조건 참조)

3. 구미의 경험

서유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냉전말기인 1980년대 말에 가면서 급증하였다. 냉전이 정착되고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되던 196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1980년대말 서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평균 6배로 증가했다. 보다 공업화된 북부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초가 되면 징집가능한 남성의 4분의 1이 양심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할 정도였다. 1960년대 중반 연간 4천명 수준이었던 독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1991년 연간 15만명에 달해 거의 그해 입영자의 수에 육박했다.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동서유럽을 포괄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에서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다.

일찍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 말기가 되면서 징집자의 수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더 많게 되었다. 그리고 징집과 병역반대 운동의 광범위한 확산은 1973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이유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자원입대자중 군복무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제대한 사람이 연평균 150명에 달했다. 1990-1991년 부시 정부가 벌인 걸프전 당시에도 1500명에서 2000명 가량의 현역 군인과 파병된 예비병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중에서 4분의 3정도가 해외파병 거부를 이유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1940년대에 미국의 흑인계 이슬람 교인들은 인종차별적 무력분쟁에 참여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흑인계 이슬람 교인들이 병역을 거부하고 투옥된 기록이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흐름에 공통점을 뽑는다면 아래와 같은 도표가 가능하다. (출처: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발전단계	국가의 판단 기준	국가 정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대 목표
태동단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정과 지위에 일관성이 없고 극심한 차별과 예외적 인정 사이에서 혼란스런 상태		
초기	“평화 교회”의 평생 회원지위 여부	비전투부문 군복무	모든 종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모든 군복무 면제
중기	위 기준 및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	군이 관리하는 대안적 민간 업무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복무 면제
후기	위 기준 및 세속적 이유의 병역 거부	민간 관리 민간 업무	선택적 병역거부 추진

이러한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사회적 의미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가며 국가와 사회의 고정관념을 바꿔낸 결과 쟁취되었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초기까지 유럽의 어떤 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영국에서만 6천5백여 명이 감옥에 가고 미국에서도 450여명이 투옥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또 우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어려운 사회적 조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전쟁 광풍과 함께 불어닥친 민족주의 열풍과 그에 바탕을 둔 국가 동원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담고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수 있겠다. 이들은 전쟁을 명분으로 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자기가 속한 사회를 어떻게 타락시키는가를 보면서 이에 대한 절망과 도전의 정신에서 병역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넘고자 했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맥락의 “일관된 반군주

의자” 운동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게끔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매우 차별적인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유엔 인권기구의 문서에서 “종교적 및 기타 신념에 근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할 수 없다... 그 처벌 또한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나라로는 1922년 노르웨이가 처음으로 종교적 및 기타 양심의 진지한 근거에 바탕한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러시아에서는 짜르 시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다가 1917년 10월 혁명 직전 케렌스키 정부가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였고, 이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려다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소련은 1918-1921년 사이 대체 복무제를 실험하다가 이후 스탈린주의로 돌입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범위는 매우 협소해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은 다른 강대국과는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였다. 비전투직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대에 입대해서 그러한 복무를 하도록 허용되었으며, 군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평화 교회 등 민간기관이 감독하는 농업, 삼림업, 보건의업 등 분야에서 순수 민간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었다. 이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판별에는 그 이전 평화 교회 소속 여부에서 종교적 신념의 진실성이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와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절대적 병역거부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모두 투옥되었다. 그 숫자는 영국에서 여성 214명을 포함해서 약 3500여명, 미국에서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었는데 약 6천여명에 달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1963년(영국)과 1973년(미국) 징집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 제도는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1965년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었다가, 1965년 대법원 판례에서 이 기준은; “당사자의 삶에서 신에 대한 믿음에 상응하는 위치를 갖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신념”으로 확대되었으며, 1970년 다른 판례에서 “윤리적 도덕적 신념” 역시 종교적 신념 만큼 정당한 기준으로 확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신론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전쟁에 대한 선택적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가장 인상적인 발전은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 나찌즘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독일인들은 그 이후 정치-군대에 관한 문화를 상당한 정도로 수정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권도 그에 따라 급속도의 진전을 이루었다. 나찌즘에 대한 예방 의식과 뉴렌베르크 전범 재판의 정신에 따라 군복무에 대한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를 중요시하게 된 독일 사회는 1949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연방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였다. 서독이 나토에 가입하고 징집제가 부활한 1959년 이후 연방 의회는 “국가간의 어떠한 무력 분쟁이라도 이에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 대체복무 또는 군대의 비전투직에 복무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해서 종교/세속, 군인/민간인 신부, 전쟁 일반/ 특정 전쟁 등의 구분을 일체 두지 않는다. 이후 북유럽 국가들이 이 모델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확대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이 모델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탈냉전 시대가 시작된 1991년 기준으로 볼 때, 강제 징집제를 시행하고 있던 유럽 이외의 43개국 중 어떤 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없었다. 앞으로 국내에도 추가로 소개되겠지만 유럽의 경험을 바라볼 때 영국을 개별적인 병역거부에서 사회운동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화된 주요 사례로, 독일을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요소로 포함시킨 모델로, 덴마크를 병역거부권의 선구자로 보는 시각도 참조할 만하다. (이상 주요 참고 자료는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찰스 C 모스코스 외 지음, 1993).

4. 길게 검토할 사항들

가. 절대적 병역거부와 선택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적(법률적) 보호는 4가지 범주를 고려해야 한다. 거부행위를 하는 시점이 신분상 민간인이었을 때와 군인이었을 때가 구분될 것이며 거부의 대상이 군복무 전체에 대한 절대적 거부인지, 특정 형태의 복무 또는 특정한 전쟁에의 참여 또는 특정한 무기의 사용에 대한 거부인가를 포함하는 선택적 거부인지 구분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인 절대적 병역거부자, 군인 절대적 병역거부자, 민간인 선택적 병역거부자, 군인 선택적 병역거부자의 범주가 있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체계에서 민간인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살상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률로 보호받을 근거가 충분히 있고 사회적 합의도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만 해도 “집총 거부”와 같은 한국 사회의 편협한 용어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의 행위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집총 거부”라는 말은 상징적 의미를 제외하면 본질을 왜곡하는 면이 크다. 현대 군조직에서 총만 들지 않으면 살상이 피해지겠는가). 그러나 시민 개인의 판단에 따라 언제 어떻게 살상행위에 불참하겠다는 다양한 선택적 병역거부권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의 문제는 병역 거부자가 군인 신분일 경우에 더욱 복잡해진다. 왜곡된 상식으로 보면 일단 군인인 이상 군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군조직에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사병에게 있으며, 이 권리는 사병의 도덕 윤리적 판단에 따라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정신을 담은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전쟁중 민간인 학살의 경우 사병은 비록 상관의 명령일지라도 이를 거부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핵무기와 열화우라늄탄, 대인지뢰, 생화학무기, 집속폭탄 등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규정된 무기를 사용하는데, 또는 사용하는 것을 보조하는데 사병이 그 행위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권리의 문제가 있다. 이는 최소한의 이성을 가진 사병이라면 신분을 떠나 당장 눈앞에 닥친 당면의 윤리적 종교적 문제이자 양심 인격상의 절박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훨씬 장기간의 복잡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마도 본질적인 긴장은 절대적 거부와 선택적 거부 사이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의 근거는 ‘살상’에 대한 양심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군조직의 ‘살상’ 행위는 군조직 내에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말은 군조직의 ‘살상’ 행위에 대해 사회가 옳다 그르다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와 별도로 다른 판단을 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민간인 군인 신분상의 차이를 이유로 권리 보호에 차이를 둘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예비군의 군사훈련 거부권, 노동조합의 불법무기 생산 거부권 등과 연관시켜 볼 때 본질적인 구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상컨대 소수 민간인의 절대적 병역거부권에서 다양한 신분/직업에서의 선택적 거부권 보장의 방향으로 서서히 합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 안보 패러다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권의 후진성과 사람들의 왜곡된 국가안보관일 것이다. 한국의 국가안보관은 비합리적인 몇가지 신화에 기초해 있는데, 이 허구적 국가안보관을 대체할 합리적인 안보 가치체계가 제시되어 경쟁관계에 돌입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논의나 보장은 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전개될 듯하다.

한국의 허구적 국가안보관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신화 또는 냉전적 광신에 기초해 있다.

- 국가안보논의는 군사, 안보 (자칭) 전문가들의 소관이다. (여기서 전문가는 군을 아는 남성들중의 일부이며, 준전문가들은 군경험을 한 남성 일반이다.)

- 왜냐하면 국가안보 논의는 특별한 (민감한, 예외적인) 논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 북한의 위협을 강조할수록 우리의 안보에 이롭다 (안보태세의 확립!)
- 북한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나 남침의 의지를 갖고 있다. (적화야욕설, 최후도발설)
- 북한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나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군사력증강 항상설)
- 국가안보 (또는 무력분쟁) 에서 군사력은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
- 북한의 남침군사력과 한국의 방어군사력은 낯알세기로 비교한다. (탱크, 비행기 숫자 놀음)
- 안보의 위협은 외부에서 온다.
- 한국(+미국)의 군사력이 우월하면 안보에 유리하다. (=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우리의 '방어력'과 무관하다.)
- 약소국의 안보에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또는 더 유리하다).
- 미국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혈맹적 지원국가이다.
- 국방 의무는 신성하다.
- 국방은 군조직을 통해서 (또 '정상적인/강인한' 육체를 가진 남성들로) 수행된다.

물론 이런 신화들은 최근 사회운동과 극소수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도전받고 있지만, 이러한 유지한 안보관과 전혀 다른 질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경우 더 빠르게 붕괴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양심적인 병역거부권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이 할 수 있는 일

* 큰 방향: 병역에 따른 인간 살상의 문제를 “신앙문제에서 인권으로” 보편화.

가. 인권단체의 준비

- 가능한 모든 논쟁구도에 대한 대비
- 피해자 조사, 연계
- 대응방법의 훈련/ 전담자 준비
- 시민, 사회운동 내부의 인식의 증진을 위한 노력 (특히, 군사주의와 남성성)
- 여론화 필진의 준비

(1) 참조 1: 병역거부와 연관된 군사부문에 대한 다양한 거부의 사례

- 무기, 탄약, 무기 보조장비의 제조 생산 판매에 대한 참여 거부
- 군사 목적의 통신, 운송, 건축에 대한 참여 거부
- 무기 장난감의 생산 판매에 대한 참여 거부
- 군사 목적의 연구활동에 대한 거부
-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군사분야와 관련된 자료 및 홍보물 부착 거부
- 방위세 납부 거부 (예: 영, 미) 등

(2) 참조 2: 군사활동에 사회적 차원에 대한 홍보 사례

- 무기별 가격 및 파괴력 (예: 전미과학자협회 웹사이트)
- 무기별 살상 효과 및 사례 (예: 대인지뢰, 열화우라늄탄)

- 무기별 군수산업의 로비 비용 대비 이윤율
- 무기판매 로비와 관련된 선진국 업체 명단과 개도국 관료의 부정비리 관계
- 현재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중인 상업용 무기의 실태 조사 (예: Non-lethal weapons 비치명적 무기?)
-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무기의 실태 (예: 화학적 수소폭탄)
- 외국과 한국 아동 교육기관에서의 무기 홍보의 차이 (유치원 및 아동 도서에 게시된 전투기, 군함, 탱크, 전쟁 그림 등의 빈도수 비교)
- 주요 교육자료 및 공공자료에 나타난 전쟁관, 군인관, 군대관, 힘의 논리의 페미니즘적 해부와 드러내기
- 나라별 군사비 지출과 사회복지 수준의 비교
- 군사훈련의 민간손실, 사회적 손실 계산 폭 (예: 농지 파괴, 농산물 파괴, 해안 해저 환경 오염 등)

나. 사회홍보

- 권위있는 홍보/설명 책자의 발간 [살인을 거부할 작은 자유 1, 2, 3]

(징집제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 징집제도가 끼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 인권으로서 병역거부권, 인도주의 철학/신념으로서 병역거부권,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병역거부 선구자들의 주요 수기 발췌, 주요 국가 병역거부권 보장 제도, 병역거부권을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방향,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젠더 관계, 인도주의, 군의 사회적 지위, 사회복지상의 효과, 남북관계, 평화 문화...), 평화사상/실천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 각 종교권에 해당되는 신앙적 관점의 홍보 책자 발간 (특히 교회 및 사찰 청년모임과 주부모임에서 회람될 수 있는 안내소책자의 발간)
- 여성 모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젠더 관점의 소책자 발간: 군사주의와 남성성 강화 및 그에 대한 시민적 저항에 관한 소책자
- 시민, 사회단체의 주체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군사주의와 남성성에 관한 의식화 책자 발간
- 적절한 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여론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개 세미나/토론회 개최

다. 조사

- 여론조사: 예상컨대 최근 징집대상 세대와 그 부모들은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 언론의 적절한 보도와 소개에 발맞춰 당사자층과 그 부모층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질 듯. 여론 조사 이전에 언론을 통해 국내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깊은 인도주의 신념과 그 온기가 수기 등을 통해 사회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할 수도.

-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 평가

라. 피해자 구제, 입법화... ■